

#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

2026.  
5. 7. (목)  
14:00 - 16: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좌장

**이창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 발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이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김승환**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과장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  
**박현창** 기획예산처 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 주최

 국회의원 **최기상·복기왕·염태영**  
 초록우산  한국도시연구소

## 문의

최기상 의원실  
(02-784-4990)







---

## 인사말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입니다.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 개최에 뜻을 함께해 주신 복기왕·염태영 의원님, 초록우산,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창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과 이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토론으로 함께해 주시는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과 교수님, 김승환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과장님,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님, 박현창 기획예산처 국토교통예산과장님,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동에게 주거 환경은 단순히 머무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주거빈곤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과 학업, 사회성 발달 등 삶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또는 지하·옥상·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아동이 44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전체 가구와 아동가구 수가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에서 아동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현행 복지 체계가 아동 가구의 특수한 상황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 아동가구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주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아동의 주거권은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에 관한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보다 두터운 주거지원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중한 정책적 제언들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 기 상

---

## 인사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복기왕(충남 아산시갑)입니다.

45만에 가까운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살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은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미래인 아동 양육 가구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 주최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최기상 의원님, 염태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초록우산, 한국도시연구소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주거급여 제도는 아동 가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층에게 중위소득 60%까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성장이 급격한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해서도 현행 48%인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보강해야 합니다.

---

아동 주거권은 국가가 베푸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거 환경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이들이 환경의 제약 없이 마음껏 꿈꾸며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의 주거 지원을 더욱 폭넓게 확대해야 합니다.

최기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에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더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가 모든 아이가 안전한 집에서 꿈을 키우는 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의원 복기왕

---

## 인사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오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에 최기상의원님, 복기왕의원님과 함께 공동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초록우산과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 좌장을 맡아주시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이창곤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시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님과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임세희 교수님,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김승환 과장님,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님, 기획예산처 박현창 국토교통예산과장님,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주거는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아동의 건강과 정서, 그리고 성장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이나 지하, 옥상,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수급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

현재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 전체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논의는 더 많은 아동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 태 영

---

## 인사말

---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회장 황영기입니다.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를 함께 열게 되어 뜻깊습니다. 아동주거권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 주시는 최기상 의원님, 복기왕 의원님, 염태영 의원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님,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동에게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충분히 휴식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정부에서도 아동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9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통해 주거권을 아동의 권리로 선언하고, 보호종료아동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책적 지원에도 여전히 많은 아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지하·옥상·고시원 등 소위 ‘지옥고’라고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은 44만 7천명으로 전체 아동의 5.2%에 달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폭염·폭우 등 재해·재난 위험도 커지면서 주거 취약 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기의 불안한 주거환경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학업 중단, 정서적 어려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적극적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현재의 주거급여 제도는 가구원 수와 소득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준이지만, 실제로 아동 가구가 감당해야 하는 양육 부담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돌봄비 등의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득이 조금만 증가해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를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옮길 수밖에 없거나, 어떤 가정은 주거비 부담으로 아동을 위한 양육비를 줄이는 선택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아동의 주거빈곤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아동이 부모와 함께 성장할 권리, 아동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약속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아동 주거권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또한, 숙의를 통해 나온 대안이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린이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7일  
초록우산 회장 황영기



# 목차

---

**개 회** 14:00 ~ 14:10

**이창곤(좌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前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

**발 제** 14:10 ~ 15:00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필요성과 쟁점** · 01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아동가구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비 보조 정책 수단 검토** · 33

**이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종 합 토 론** 15:00 ~ 15:50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49

**김승환**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과장 · 55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 · 61

**박현창** 기획예산처 국토교통예산과장 · 65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 67

---

**질 의 응 답** 15:50 ~ 16:00



# 발제 1

##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필요성과 쟁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필요성과 쟁점


2026. 05. 07

## 차례


- I 2019년 아동 주거권 보장 선언 그 후
- II 해외 사례
- III 청년 월세 지원 사례
- IV 시흥시와 서울시의 아동가구 주거비 지원 사례
- V 주거급여법 개정 관련 쟁점

#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최기상**  
**아이 주거복지지원 강화법**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우리나라의 주거빈곤아동 **44만 7천 명**  
\*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지하·옥상·고시원 등 거주 전체 아동의 5.2%  
**열악한 주거 환경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  



**최기상**  
**아이 주거복지지원 강화법**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차료 등 지급하는 제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  
**개정안은**  
**아동 양육 가구에 한하여**  
 (18세 미만)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로 확대**  
\* 현행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기준  
**아동 주거권 보장!**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735
------	-------

발의연월일 : 2026. 3. 25.  
 발 의 자 : 최기상·안도걸·김기표  
 김재원·이경문·이주희  
 정일영·김영환·이성운  
 김한규 의원(10인)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최소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8 이하인 사람임.

그런데, 아동(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주거환경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거빈곤아동(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지하·옥상·고시원 등 거주)이 44만 7천명으로

전체 아동의 5.2%에 달하며, 열악한 주거 환경은 피부, 호흡기질환 등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침.

한편, 정부는 저소득·무주택·독립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및 청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함.

이처럼 주거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청년층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가구에 대해서도 주거급여 등 정부의 주거지원 확대가 필요함. 참고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현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동양육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48% 초과 60% 이하 가구(약 68,300가구)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연간 약 2,4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등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택동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 중 하나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경하도록 하며, 주거급여의 항목 중 하나로 관리비를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93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최기상·이혜식·황은하  
안도령·조승래·한경애  
권철승·이성운·진성준  
김남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26년 기준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제도가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폭발·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하여금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주택 품질에 대한 기준(이하 "주택품질기준"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등의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제공, 해당 주택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특히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안전망 강화 의지와 주거복지예산 수립의 원칙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15
----------	-------

발의연월일 : 2018. 9. 13.  
발 의 자 : 박용근·임종성·교승민  
박재호·김병관·변재일  
남인순·우원익·박종문  
송갑석·김태영·신영민  
권철승·권현희·이준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가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취약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이하 "보호대상아동"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 주거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거희망계층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고 아동의 건강, 안전 및 심리적 안정 등을 고려한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아동을 현행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주거원칙과 주거용달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주거빈곤아동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의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주거급여 대상 청년월세 기준(기준중의소득의 60% 이하)처럼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향후에 관련된 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과정에 예산당국으로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안을 마련해서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23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다른 예산 깎더라도 주거복지예산 확실하게 확보

노 대통령은 건설교통부의 '서민 주거안정과 선진 주거문화의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보고와 토론이 끝난 후 "앞으로 10년 안에 약 15%의 공공주택 비축분을 갖는다는 정책 목표가 국민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공동의 목표로 자리 잡았을 때 아무나 흔들지 못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주거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원의 한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수준이었다"며 "이 부분에서 각별한 결단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건설교통부 다른 어떤 예산을 깎더라도 반드시 공공 주거정책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주거복지 만큼은 재정 능력에 맞춘 공급정책이 아니라 수요에 맞춘 공급정책으로 전환하라"며 주거복지 전담 조직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6년 4월 25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거복지예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예산 외 기금(지방채 등)을 사용할 수 있음. (제2조 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1. 소년소녀가장 지원금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복지 우선기금을 통하여 운영된 고밀도·저소득층·신공공주택·청년·취약계층(장애인·이동불편계층)·제2주택소유자 지원 기금(주택임대차)을 말한다 등 주거급여가 필요한 계층이거나 주거복지정책의 추진에 주거급여가 필요하도록 할 수 있음.

# I

## 2019년 아동 주거권 보장 선언 그 후



### 독일보다 100년 늦은 2019년의 아동 주거권 보장 선언

####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155조, 아동가구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

- 1919년 바이마르 헌법 155조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주거권, 특히 아동가구의 주거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함

국가는 토지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분배와 사용을 감독하며, 각각의 주거 및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주택을 모든 독일의 국민, 특히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해야 한다.



- 오늘날 독일 기본법 20조의 사회국가원리(sozialstaatsprinzip)에서 독일 국민에게 적절한 주택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여 주거권 보장으로 이어짐

####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26조 주거권, 28조 주거권을 포함한 아동권 명시

##### 26조 주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주거권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통해 합당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8조 아동

모든 아동은 집(shelter)···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019년 10월 24일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 독일보다 100년 늦은 우리나라의 2019년 아동 주거권 보장 선언

" 꿈을 키우고, 꿈을 찾는 집 "		
핵심대상	다자녀 가구 +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	
중점 추진과제	주거여건 개선 종합지원	
	다자녀 가구 및 보호종료아동 등	
	비주택 거주가구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자녀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li> <li>공급물량 확대·제도개선</li> </ul>
	금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도시보증공사(금리, 대출 한도·기간 혜택 강화)</li> </ul>
이주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돌봄시설 설치 및 돌봄 서비스</li> <li>보호종료아동 등 사례관리</li> </ul>	
수요 발굴 +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구 단위의 정밀 수요조사</li> <li>우선공급지 선정 및 지원 착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사업 확대</li> <li>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시원 거주자 이주지원상품</li> <li>주거급여보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금이사비 지원 프로그램</li> <li>돌봄·일자리 지원사업 등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협업체계를 통한 이주희망 수요 전수조사</li> <li>지원 시급성에 따라 지원 착수</li> </ul>	

출처 : 국토교통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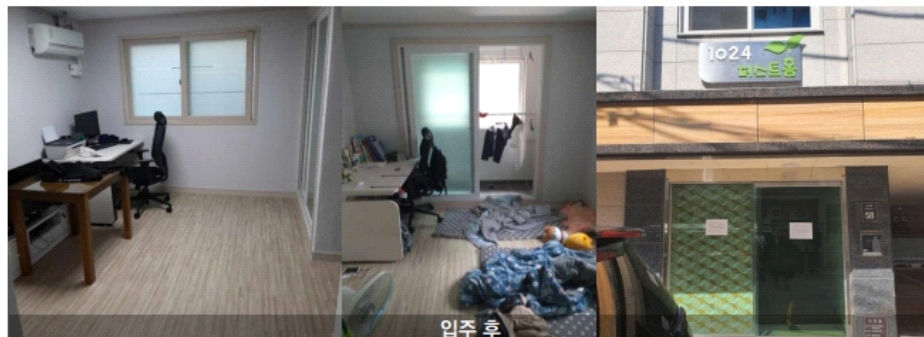
9

## 공공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시흥에 공급된 다자녀 퍼스트홈(2020년 5월)



그전에 살 때는 바퀴벌레 때문에 아이들이 공포에 시달렸거든요. 저도 마참가지고요.

퍼스트홈 거주 가구



10

## 영화 ‘기생충’이 호명한 반지하 거주 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

‘현실판 기택네’ 가보니...“습기·곰팡이에 호흡기 질환 시달려” “빗소리만 들어도 잠 설치”

경향신문 2020년 2월 20일자

거주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 지역의 반지하 거주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 남구 | 주안2동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조사)  
※ 2010년 통계로 행정구역과 지명이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2동 를(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지역에는 9042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 반지하에 사는 이웃은 663 가구입니다.  
이는 이 지역 전체 가구의 7.33%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인근로  
우리 동네 검색  
전국 반지하 현황

서울에선 어디에 반지하가 많을까

주거민의 이야기

우리가 반지하를 이야기하는 이유

Windows 정품 인증  
(설치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Windows를 정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2020/underground/index.html](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2020/underground/index.html)

11

##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2020년 7월 16일)



조례 제정에 앞서 서울시의회 의원들 아동 주거빈곤 가구 방문

12

##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와 한계

### • 성과

-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규모 확대
- 주거급여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기준 43%→ 46%로 상향)
-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사업 확대
- 매입·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제도 도입
- 무보증 매입임대주택(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동시 수급가구) 도입
-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 **쪽방촌 '선이주 후개발' 계획 발표**



### • 한계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 등 주거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계층에 대한 고려 부족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최저소득계층 주거문제 해결이 어려움
- 임대료가 높은 행복주택 위주의 건설형 임대주택
- 신혼부부에 대한 과도한 지원

#### “50년된 영등포 쪽방촌,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

- 360여명이 거주하는 영등포 쪽방촌 1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 쪽방주인을 위한 영구임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민간분양 등 1.2천호 공급
- 무료급식·진료 등 쪽방주인을 지원하는 돌봄시설 재정착 지원
- 돌봄시설 / 국토부·서울시·영등포구 / LH·SK·민간권 협력체계 구축
- 쪽방촌 정비 + 젊은층을 위한 주택공급 + 신안산선 개통(2024년)으로 영등포가 포용과 활력이 넘치는 시민권의 중심지로 도약
- 영등포 노점정비,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와 함께 도시환경 개선
- 지자체 공모 등을 거쳐 연내 추가 쪽방촌 정비방안 마련
- 서울 나머지 쪽방촌은 서울시 도시재생·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단계적 정비
- 서울 이외 지역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연내 시범사업 추진

13

##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주거복지 파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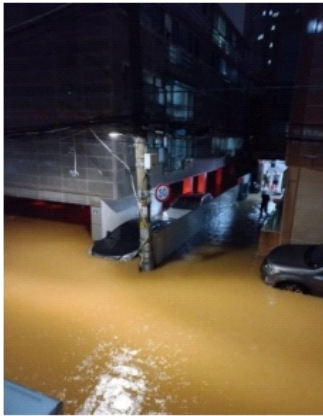


2022년 8월 8일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 수해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누구도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지하와 쇠창살을 눈앞에 두고도 '왜 빠져나오지 못했나?'는 우문을 던짐  
2022년 제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 억원 삭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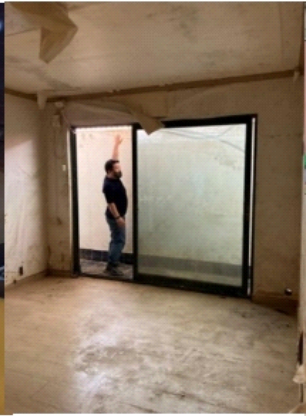
14

## 2022년 8월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지하에서 13살 아동이 생명권을 잃음

- 관악구와 동작구 모두 상습 침수되는 저지대 (반)지하에서 참사가 발생함
- 관악구의 3인 가구(아동, 장애인, 여성 노동자), 동작구의 1인 가구 모두 주거급여 수급가구 있음



2022년 8월 관악구 수해 침사 지하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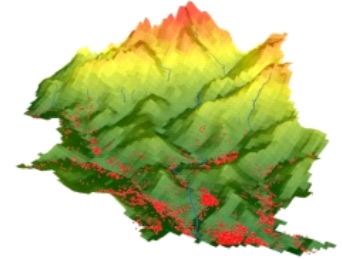


상인의키보다깊은 지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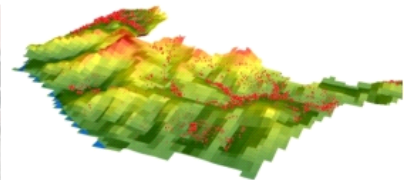


물이 모일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지형

구부러져 있는 창틀



관악구 3D 침수흔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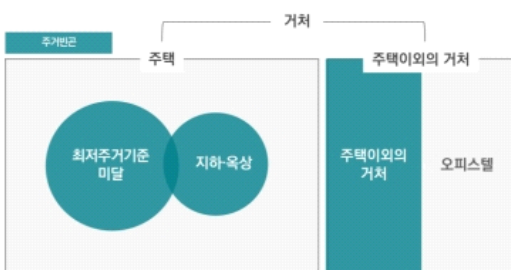
동작구 3D 침수흔적도

15

## 전국 176만 주거빈곤 가구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995년 589만(46.3%)에서 2020년 97만(4.6%) 가구로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주택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 거주 가구는 1995년 4.2만(0.3%)에서 2020년 44.8만(2.1%)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주거빈곤가구는 2005년 305만(19.3%)에서 2020년 176만(8.4%) 가구로 규모가 감소함
- 2020년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서울(14.5%)·제주(10.5%)·경북(9.9%) 순으로 높고, 세종(3.7%)·광주(4.1%)·울산(4.1%) 순으로 낮음

(단위 : 가구, %)



주거빈곤 가구의 구성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사실	4,429,614 (34.8)	2,717,089 (19.2)	1,359,552 (8.6)	894,510 (5.2)	635,977 (3.3)	413,082 (2.0)	
	면적	3,122,776 (24.5)	2,109,895 (14.9)	1,413,550 (8.9)	1,265,792 (7.3)	1,011,752 (5.3)	588,446 (2.8)	
	총방수	1,357,155 (10.7)	477,368 (3.4)	167,289 (1.1)	126,890 (0.7)	100,639 (0.5)	56,923 (0.3)	
	가구 전체	가구	5,891,563 (46.3)	4,071,328 (28.7)	2,536,259 (16.1)	2,028,699 (11.8)	1,560,752 (8.2)	970,033 (4.6)
		인구	18,009,979 (43.2)	11,399,503 (26.1)	6,645,671 (14.8)	4,997,917 (10.8)	3,826,837 (8.0)	2,208,726 (4.5)
주택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		42,419 (0.3)	62,875 (0.4)	56,731 (0.4)	128,675 (0.7)	391,245 (2.1)	447,675 (2.1)	
주거빈곤		5,933,962 (46.6)	4,134,203 (29.2)	3,046,332 (19.3)	2,555,810 (14.8)	2,276,562 (12.0)	1,757,856 (8.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원자료, 1995~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원자료, 2015~2020년.  
 주: 1995년과 2000년의 주거빈곤에는 지하-옥상 거주 가구가 포함되지 않았음. 당시 조사 미실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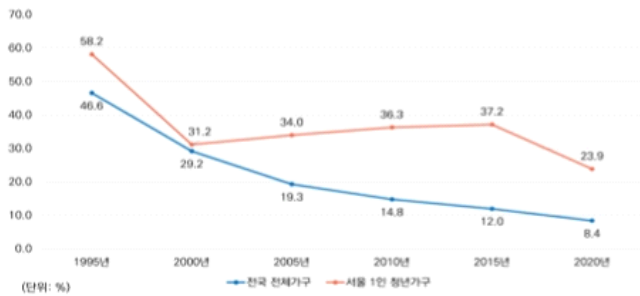
## 2020년 27.6만 아동가구(아동 44.7만 명)가 주거빈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전국 전체가구는 1995~2020년에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서울 1인 청년가구는 1995~2005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5~2015년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2015~2020년 큰 폭으로 감소함
- 2020년 노인가구 45.0만, 청년가구 34.6만, 아동가구 27.6만 가구가 주거빈곤 상태임

### 아동, 청년, 노인가구의 주거빈곤(2020년)

(단위: 명, 천가구, %)

구분	아동가구	청년가구	노인가구	
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	210	204	264
	지하	3.9	6.7	5.6
	육상	36	55	79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0.7	1.8	1.7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7	17	8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0.1	0.6	0.2
주거빈곤	276	346	450	
전체	5,403	3,029	4,724	



전국 전체가구와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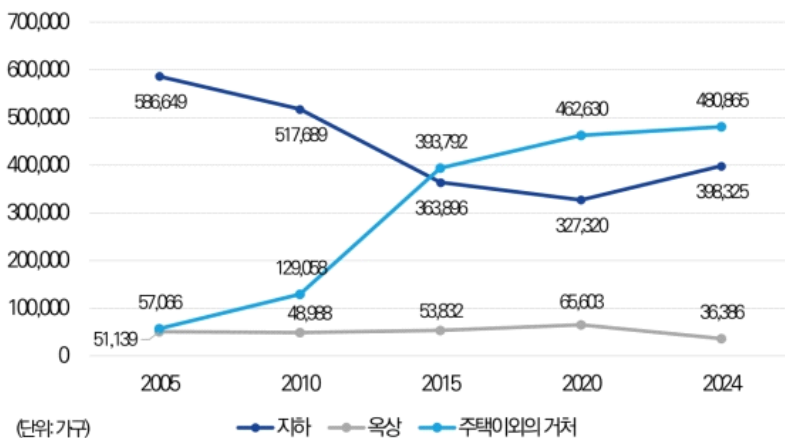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원자료, 1995~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원자료, 2015~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원자료,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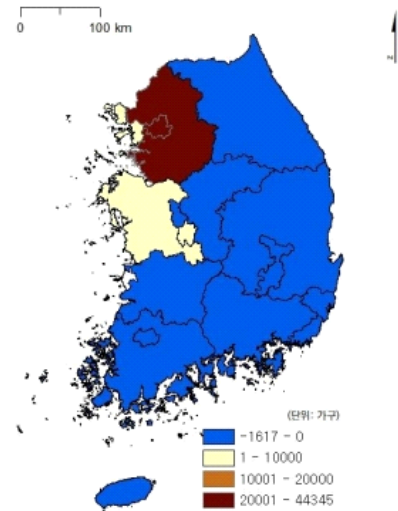
17

## 2020~2024년 증가하고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

- 2005~2020년 전국적으로 지하 거주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2020~2024년 전국 7.1만 가구, 서울 4.4만 가구 증가함
- 2020~2024년 지하 거주 가구수가 12개 시도에서 감소했으나 서울(44,345가구), 경기(24,940가구), 인천(4,900가구), 대전(1,488가구), 충남(71가구) 5개 시도에서는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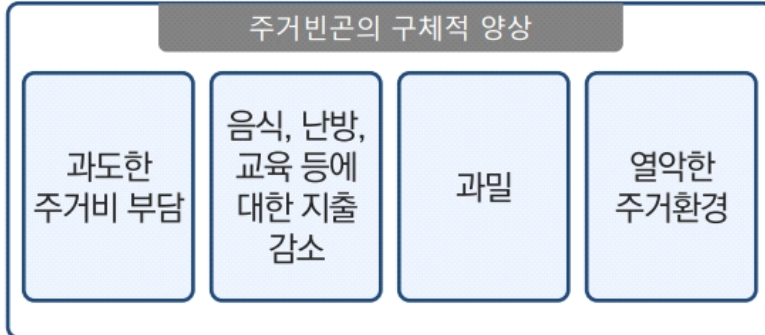
지옥고 거주 가구의 시계열 변화(2005~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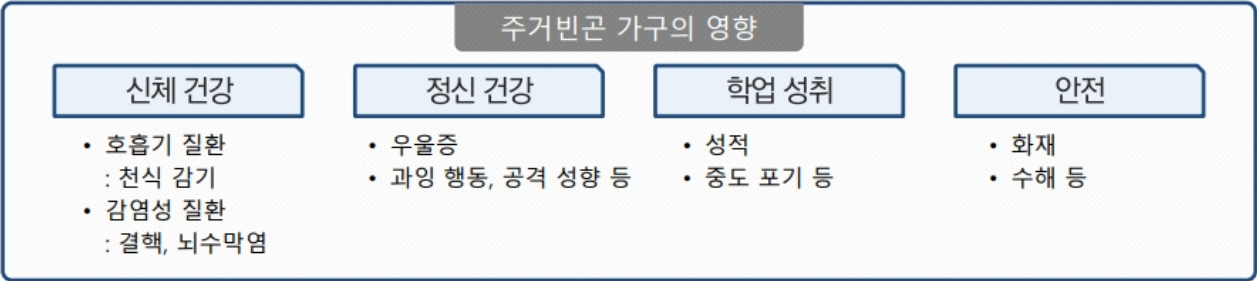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원자료, 1995~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원자료, 2015~2020년. 주: 1995년과 2000년의 주거빈곤에는 지하 옥탑 거주 가구가 포함되지 않았음. 당시 조사 미실시.

18

## 주거빈곤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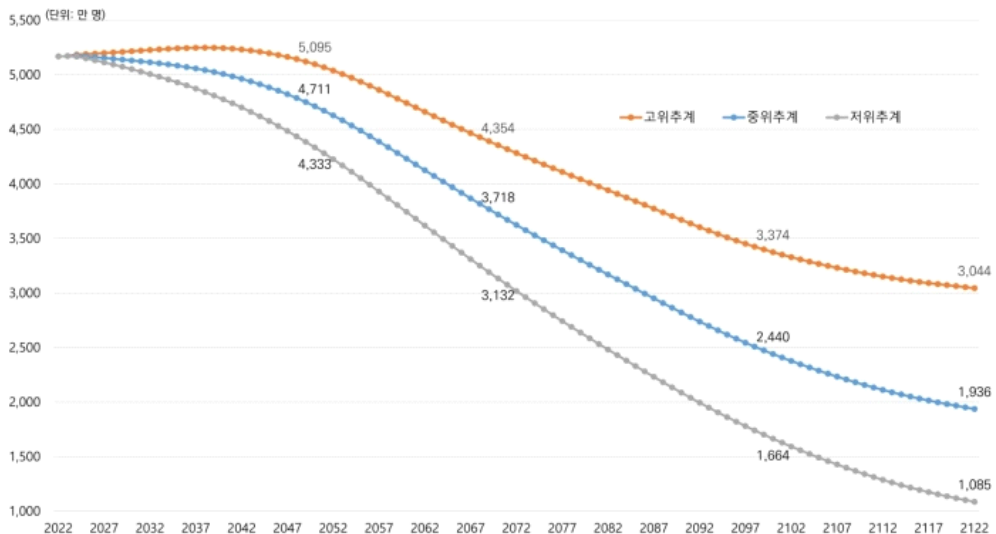


아동 살해가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저출산국가 대한민국



##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지는 아동 감소

- ❖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122년 한국 인구는 고위 3,044만 명, 중위 1,936만 명, 저위 1,085만 명으로 추계됨
  - 2072년에는 고위 4,354만 명, 중위 3,718만 명, 저위 3,132만 명으로 추계됨



## 여전히 아동 주거권 보장 선언에 그치고 있고, '아동 우선' 원칙이 빠진 법과 제도

- ❖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아동 우선'의 주거 정책은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고, 법률과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지만 큰 진전은 없었음
  - 아동 주거권 보장 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아동주거빈곤예방법)이 2020년 9월 발의되었으나 개정되지 못함
  - 서울시는 2020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산시 등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짐

###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국내의 법령·지침〉

성격	법령	아동가구 주거지원의 내용 포함 여부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주거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거기본법」,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
정책 대상으로서의 빈곤아동 기준 설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빈곤가구의 최저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주거요소가 있는 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21

## 아동 주거권 선언에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제언

- ❖ 아동 주거권 보장 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과 조례 개정 및 제정
  - 최저주거기준의 구체성과 실효성 강화
  -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예산, 인력, 조직에 대한 내용 포함
- ❖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한 아동 주거권 보장 대책의 기반 마련
- ❖ 한 명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자녀에서 아동으로 정책 대상 확대
  - 기존주택 등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다자녀→아동)
- ❖ 아동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배분 강화
  -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상향, 정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최소한 청년·신혼부부와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 돌봄시설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SOC 확충
  -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유희공간 활용
- ❖ 중위소득 60%이하의 아동, 청년 가구 대상의 주거상향을 전제로 하는 바우처 신설

22

# II

## 해외 사례



### 주거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무(UN 해비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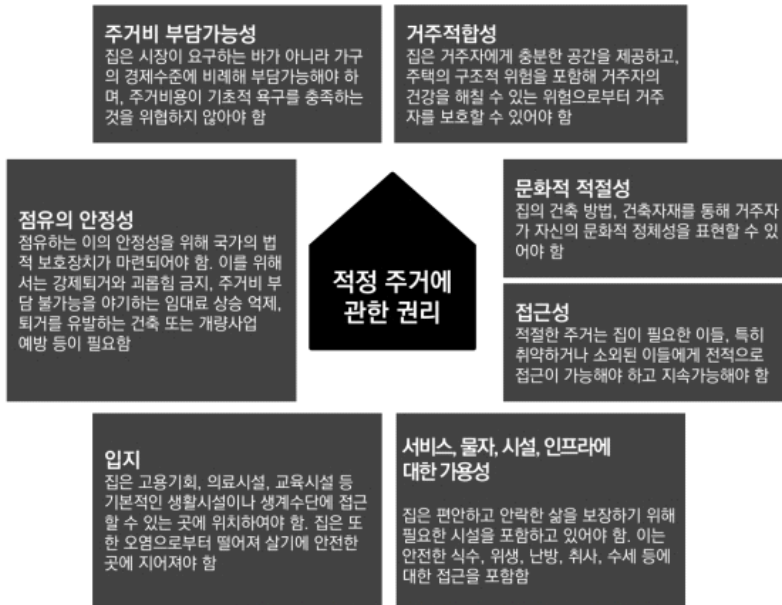
- 적정 주거(adequate housing) : 점유의 안정성, '부담가능성(affordability)', '살만한 집(habitability)' 등
- 정부개입 없이 시장만으로는 주거권이 실현될 수 없음 → 비적정 주거 문제 발생
- 비적정 주거 :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존엄한 삶을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최대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정부의 전략은 단지 좋은 의도의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됨
- 국제법은 주거권 실현을 위해 정부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함



###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무(UN 해비타트)

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	▪ 정부는 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황에 대한 점검	▪ 정부는 주택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보호의 의무	▪ 정부는 민간 부문의 제 3자에 의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정부는 주거권 향상을 위해 주택 시장과 임대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
실현의 의무	▪ 정부는 주거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법적·행정적·재정적·사법적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

## 적정 주거에 관한 권리의 구성 요소



UN 일반 논평(General Comments) 4

현행 주거급여는 '부담가능성(affordability)' 완화에 그치고 '살만한 집(habitability)'을 보장하지 못함  
 현행 주거급여는 예산과 인력 제약 및 주거품질 연계 미비로 주거권 보장에 한계가 있음

## 미국, 호주, 일본 사례

### 미국

- 1997년 클린턴 대통령이 연방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13045호 '환경의 건강 및 안전 위해 요소로부터의 아동 보호 (Protection of Children from Environmental Health Risks and Safety Risks)' 발표
- 연방 기관이 아동의 환경적 위험성에 대응하도록 하면서 연방 차원의 조치 본격화

### 호주

- 2000년대 초반 아동 주거 관련 정책 논의 시작
- 2009년 '아동 보호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Protecting Children is Everyone's Business)'를 기치로 아동의 안전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계획 '호주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 계획(The 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발표

### 일본

- 1994년 엔젤플랜, 1999년 신엔젤플랜 발표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학교 및 병원 등 지역사회시설이 협력하여 자녀양육을 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도록 방향 제시
- 건설성은 양질의 가족대상 주택의 공급, 자녀양육과 가족단란을 위한 주생활 실현, 놀이터 등 안전한 생활환경 정비를 명시

## 미국, 호주, 일본 사례

### 미국

#### 주택 안전

아동 건강에 위협이 되는 납(lead)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에 대한 규제  
보스턴 주택부 - Kids Can't Fly 프로그램을 통해 창문 보호장치 지원

#### 주거안정성

2009년 HEARTH(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법으로 홈리스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주택 공급 시 아동가구에 우선권 부여

### 호주

#### 주거안정성

'Household Organizational Management Expenses(HOME) Advice Program'  
- 임대 혹은 자가 소유를 유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함에 있어 아동가구에 우선순위 부여

#### 주택 부담가능성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보조(Rent Assistance)/공공주택 입주권 부여

### 일본

#### 주택 부담가능성

'우량임대주택' - 자녀양육세대를 포함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료 할인

#### 주거안정성

공영주택 입주 지원 -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인 자녀가 있는 세대에 대해 공영주택 입주 소득 기준 완화

27

##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연방 행정명령 '환경의 건강 및 안전 위해 요소로부터의 아동 보호'

- 클린턴 대통령의 연방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045) '환경의 건강 및 안전 위해 요소로부터의 아동 보호(Protection of Children from Environmental Health Risks and Safety Risks)'는 통계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관 간 포럼(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을 제도화함
- 이 때 제도화된 결과는 현재까지도 작동하고 있음

6-601. 미국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책임자(이하 책임자)는 아동 및 가족 통계에 관한 기관 간 포럼(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이하 포럼)을 소집해야 한다. 이 소집은 적절한 연방 통계청(Federal statistics)과 연구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 포럼은 국가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6-602. 포럼은 각 보고서에 포함할 지표를 결정하고, 각 지표에 사용될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포럼은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연방 수준의 데이터 수집 및 보급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출처 : Executive Order 13045

28

##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연방 행정명령 '환경의 건강 및 안전 위해 요소로부터의 아동 보호'

### 행정 명령 13045 - 환경의 건강 및 안전 위해 요소로부터의 아동 보호 (Protection of Children From Environmental Health Risks and Safety Risks)

1997년, 클린턴 대통령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13045



아동이 접촉하거나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물질(예: 공기, 음식, 물, 토양, 여러 제품들 등)로 인해 건강 또는 안전에 가해지는 위해

### 환경의 건강 및 안전 위해 요소로부터의 아동 보호 (Protection of Children from Environmental Health Risks and Safety Risks)

- ✓ EPA는 이 명령의 규칙을 공표할 때, 계획된 규정이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잠재적으로 효과적이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보다 본 규정이 바람직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 OCHP(Office of Children's Health Protection)의 주요 목표는 EPA의 모든 조치(action) 및 프로그램이 아동의 고유한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이다.

29

##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연방 행정명령 '환경의 건강 및 안전 위해 요소로부터의 아동 보호'

### 아동 및 가족 통계에 관한 연방 기관 포럼(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 아동 및 가족 통계에 관한 연방 기관 포럼

- 각 기관 간 조정과 협력 증대
- 아동 및 가족 관련 연방 데이터의 수집과 보고에 대한 일관성 향상
- 아동과 가족의 상태(status)에 관한 정보의 보고 개선

- ✓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연구와 활동에 관여하는 23개의 연방 정부 기관으로 구성
- ✓ 1994년에 행정 명령 번호 13045에 따라 1997년 4월에 공식적으로 설립

연례보고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



아동 복지의 주요 국가 지표 요약 제공

미국의 아동들: 주요 국가 복지 지표  
(America's Children :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

데이터를 사용하기 쉽게 비전문적인 형식으로 제공

정책 입안자와 대중 간의 토론 촉진  
데이터 제공자와 정책공동체 간의 대화 촉진  
아동 및 가족 관련 연방 데이터의 개선 촉진

30

##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연방 행정명령 '환경의 건강 및 안전 위해 요소로부터의 아동 보호'

### 주거지원과 교육, 건강 등의 지원 결합

- 미국의 연방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045) '환경의 건강 및 안전 위해 요소로부터의 아동 보호(Protection of Children from Environmental Health Risks and Safety Risks)'에서는 기관 간 포럼(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을 다음과 같은 구성하고 있음

(a) 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는 보건복지부 장관	(b) 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을 환경 보호 기관의 장
(c) 교육부 장관	(d) 노동부 장관
(e) 법무부 장관	(f) 에너지부 장관
(g)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	(h) 농림부 장관
(i) 교통부 장관	(j) 미국예산관리국의 장
(k) 환경 품질 위원회 의장	(l)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의장
(m) 경제 정책 총재 보좌관	(n) 국내 정책 총재 보좌관
(o) 과학기술 정책부 책임자 및 보좌관	(p) 경제 고문 위원회 의장
(q) 대통령이 수시로 이외의 행정부 및 행정 기관 임원을 임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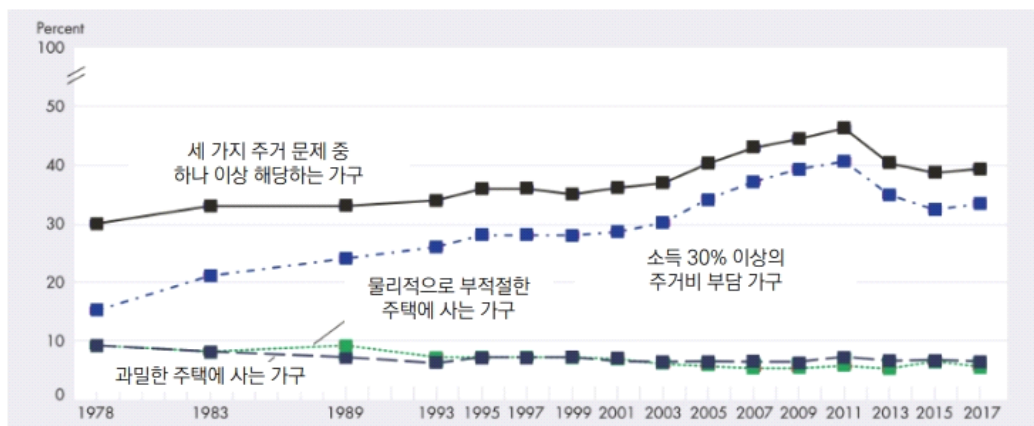
- 교육, 돌봄 서비스, 건강(보건)서비스를 주거지원과 결합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의 관련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특히 조직 및 예산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31

##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연방 행정명령 '환경의 건강 및 안전 위해 요소로부터의 아동 보호'

### America's Children: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

주거 문제 유형별 0-17세 아동이 있는 가구 비율(1978-2017년)



출처: 미국 인구 조사국, 주택 및 도시 개발국, 미국 주택 조사.

32

#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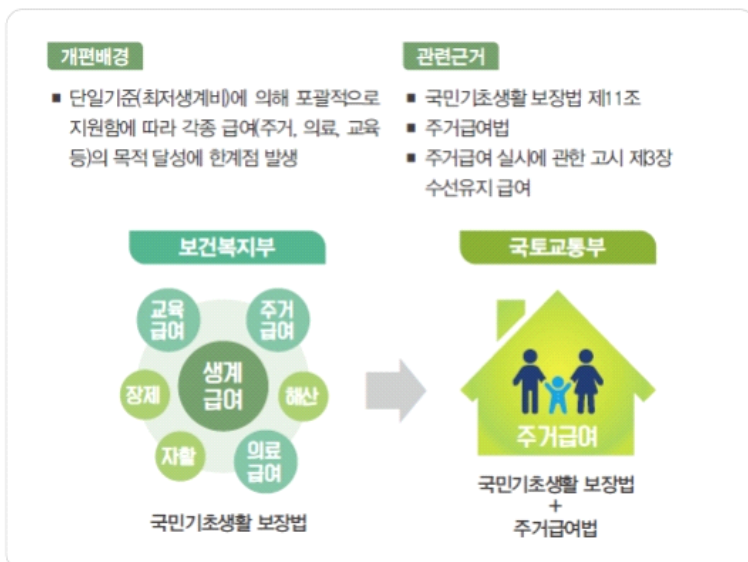
## 청년 월세 지원 사례



### 보수, 진보 정부 모두가 노력한 연대의 산물 주거급여

#### 박근혜 정부

- 주거급여 신설



#### 대선 공약 이상을 실현한 문재인 정부

-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보장가구 소득만 평가
-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행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세 미만 청년 지원. 대상이 원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서 원가구가 수급가구가 아닌 대부분의 청년은 정책 대상이 되지 못함
- 2022년: 청년월세지원 제도화

#### 실현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도 올리겠다.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 기준 임대료도 현실화하겠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하도록 혹서기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하겠다.

조선일보, 2021년 12월 24일자

## 시범사업에서 상시사업으로 전환중인 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

- 2022년부터 중위소득 60%이하 청년(부모는 중위소득 100%이하)에 대해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이 1년 한시 지원으로 시작되었고, 2024년 2년으로 확대되었음

구분	박원순	오세훈 시장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배경	청년출발지원공약 발표 (2019년)	보궐선거 공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
시작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책 발표는 2021년)	2022년	-
정책 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본인 중위소득의 60%이하, 부모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 기준 유지 청약 저축 가입을 전제로 함	청약 저축 가입 폐지
지원 기간	-	최대 10개월	1년	2년	2년
지원 규모	5,000가구	50,000가구 (2022년은 20,000가구)	<계획> 150,000가구	<실적> (2023년) 9.6만 가구 (2024년) 17.3만 가구 (2025년) 22.2만 가구	6만 가구
예산	약 50억 원	500억 원	3,000억 원	(2025년) 국비 1,349억 원	(2026년) 국비 1,300억 원

35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2020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19~39세 청년 1인가구에게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함
  - 2020년 사업 발표 당시 지원 대상자 수는 5천 명이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2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음
- ❖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는 연 5천 명이었던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 5만 명으로 10배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 2022년에는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넓히고 대상자를 **30,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적은 미달함
- ❖ 2020~2024년간 누적 11.4만 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1.5만 명을 모집할 계획을 발표함
- ❖ 월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가구 소득과 자산은 고려하지 않음
  -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만 19~39세인 무주택 1인 청년가구**임
  - 임대료기준은 보증금 8,000만원 이하(2024년 이전에는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임
  - 재산기준은 1억 3,000만원으로 이하(2024년 이전에는 1억 원)이나,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보유자는 제외**함
  - 그 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수당 수급자, 임대인이 부모인 임차인 등을 제외함
- ❖ 대상자 30,000명은 소득·보증금·월세 기준을 적용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는데, 신청 인원이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 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함

36

## 수도권 지자체 청년 주거비 지원제도

지자체	사업명	연령기준	소득기준	임대료기준	월 지원한도	지원기한	예산
서울 광진구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19~39세	150% 이하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20만 원	12개월	4.6억 원
서울 은평구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19~39세	150% 이하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10만 원	12개월	1.0억 원
경기 가평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19~39세	150% 이하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20만 원	24개월	*1.9억원
경기 수원시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사업	19~39세	120% 이하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10만 원	5개월	*20억원
경기 안양시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19~39세	120% 이하	-	10만 원	10개월	*1.5억원
경기 파주시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19~39세	120% 이하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10만 원	12개월	1.6억 원
경기 평택시	평택시 청년월세 지원	19~39세	120% 이하	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20만 원	12개월	2.4억 원
경기 화성시	화성시 청년월세 지원	19~39세	120% 이하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15만 원	6개월	0.6억 원
인천광역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60% 이하	-	20만 원	24개월	4.7억 원

자료: 각 지자체별 사업공고문;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주: 1) \* 표시 예산은 세부사업 단위로 공개되지 않아, 사업공고 또는 예산집행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임.

2) 광진구 사업은 2025년 공고 기준으로 정리함.

##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과 청년월세 지원사업

- ❖ 국내 가장 대표적인 주거비 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한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임
- ❖ 그러나 만 30세 미만 비혼 청년을 개별가구로 인정하지 않아,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에도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했음
- ❖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만 19~34세 청년에 한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함
  -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충남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되었던 가구는 부모를 기준으로 3인가구 주거급여액을 지급했는데, 제도 개선으로 두 가구를 개별가구로 인정하여 주거급여를 각각 지급함
- ❖ 2022년부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가구에 **12개월간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청년월세 지원사업)** 제도를 시행함
  - 청년가구 기준은 **만 19~34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임
  -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000만원 이하**임
  - 임대료기준이 초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 주거급여와 달리,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제외되며 전세임대주택 및 보증금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함
  - 최초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요구하며 **급여 지급 중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 부부가구 등 2인 이상 가구도 해당하나 최대 지원금액은 20만원으로 1인가구와 동일함
  -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자도 포함되지만, 주거급여액이 20만원 이상이면 제외됨

## 법을 개정보다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정책인터뷰]

2023. 12. 28. 13:51



정치저널 >

내년부터는 취학과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됩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도 시행 의미가 크네요.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경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장)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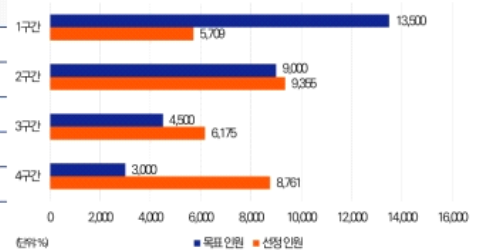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비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비교(2025년)

구분	서울시(자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서울시)
연령기준	19~39세	19~34세
월 지원한도	20만 원	20만 원
지원기한	1년	2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산기준	1.3억 원 이하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소득·자산기준	신청자 소득 없는 경우만 조회	(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이하
자동차가액기준	2,500만 원 미만	없음
임대료기준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없음
대상자 선정 원칙	4개 구간 추첨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가구(권리 기반 제도)
사업수행기관	SH공사	자치구
2025년 예산	421.2억 원	647.7억 원
2025년 예산 집행률	99.3%	92.7%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구간대별 목표 인원과 선정 인원(2022년)



- 월세가 낮은 1구간에 비해 4구간 선정 인원이 많음

자료: 서울특별시, 2023, 우원식 국회의원실 제출자료.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한계도 명확



국토교통부  
청년들의  
홈서기름 응원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4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대상액 180)

**지원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연소득 500만 원 이하)

**신청인원**  
한국 국민(거주국별 신청인원 수가 다름)  
\*지원자가 10명 이상인 주택, 해당 청년 5명 이상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양육,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대채무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월에 다수 거주 전담자 (단, 양육권자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과거 국토부가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신청하여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일: 24.7.29~25.2.28) 수혜자는 2차 지원 대상 종료 시(2025년 12월)부터 신청 불가

**지원한도**  
상대 납입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임대기간 만료일 20일전까지 주거급여비용 지원하고 지원

**신청일수**  
신청기간: 2025.3.30(월) 09:00 ~ 2025.5.29(금) 16:00  
신청자 발표: 2025.9.14(일)  
\* 신청자는 15일과 14일에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페이지(www.bk49.go.kr)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소득·재산 기준**  
소득: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한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청년독립가구 1억2천만원 이하 및 한가구 4억천만원 이하  
\* 한가구: 청년세대주(세대주)와 세대주(세대주)를 주소지에 거주중인 "연속" 거주  
\* 한가구: 청년세대주(세대주)와 세대주(세대주)

❖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급하게 시행이 결정되면서 청년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는 미완성의 제도 설계

- 청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여전히 적용
- 지원기간이 2년으로 한시적
- 주거품질 연계미비로 주거부담 경감에 정책 효과 제한
- 아동가구 등 다른 정책 대상과의 형평성(서울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높은 소득 기준으로 인해 추첨제로 정책 대상 선정)
- 전담 공무원 총원 등 전달체계 개선 부족(서울 관악구 등 청년가구 밀집 지역에서는 공무원 업무 과부하)

## IV

### 시흥시와 서울시의 아동가구 주거비 지원 사례



## 2019년 아동주거권 보장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로 이어진 시흥시의 주거복지

### 2016년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도입 및 2019년 아동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 시흥형 주거비지원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0월 도입함
- 처음에는 1인 가구 6만 원에 가구원 1인당 5,000원씩 가산한 정액을 지원하였고, 2018년부터 중앙정부 주거급여(임차급여)와 연동해 기준임대료의 50%를 지급함
- 2019년부터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아동가구는 아동 1인당 일반가구 지원금액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함
- 소득 기준은 201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서 2017년부터 60% 이하로 확대하였고, 2023년부터 아동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함
-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주거 정책의 중심에 놓고 실행된 최초의 정책임

중앙정부 주거급여와 시흥형 주거비 지원 지원금액(202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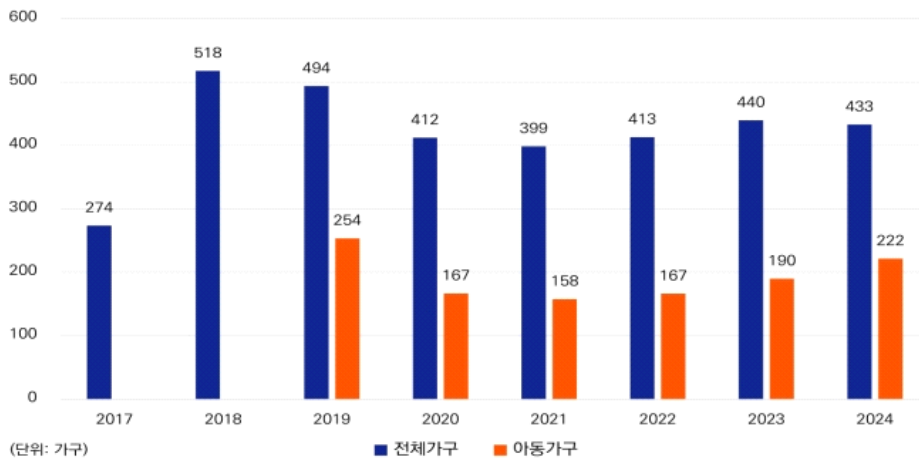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중앙정부(2급지)		281,000	314,000	375,000	433,000	448,000	531,000
시흥형 주거비 지원	일반가구	140,500	157,000	187,500	216,500	224,000	265,500
	아동 가구 가산금액	42,150 (아동 1인)	47,100 (아동 1인)	112,500 (아동 2인)	129,900 (아동 2인)	201,600 (아동 3인)	238,950 (아동 3인)
	아동 가구 지원 금액	182,650	204,100	300,000	346,400	425,600	504,450

자료: 국토교통부, 2025. 주거급여 사업 안내; 시흥시 홈페이지(<https://www.siheung.go.kr/portal/contents.do?mId=0208090201>).

43

## 2019년 아동주거권 보장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로 이어진 시흥시의 주거복지

- ❖ 시흥형 주거비 지원 가구수는 2020년 이후 400가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연도별 월평균 지원 가구수는 2017년 274가구에서 2018년 518가구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494가구로 감소함. 2020년 이후에는 400가구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음
  - 2020년 이후 집행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99.8%로 거의 전액 집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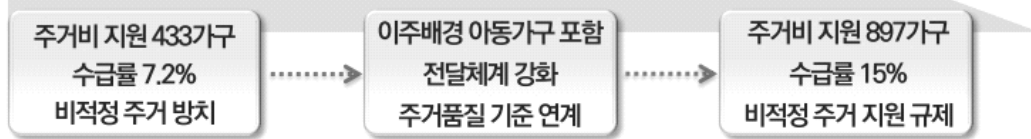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월평균 가구수 변화(2017~2024년)〉

44

## 시흥시 자체 예산만으로 어려운 제도 개선

- ❖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은 새로운 실험과 끊임없는 제도 개선으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를 선도하고 있음
  - 2016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중앙정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17년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로 확대→2022년 중앙정부 청년월세지원 시행(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 **'아동 중심' 주거복지의 전국적 모범사례**로 민선 7기와 8기에 제도 개선이 있었음
    - ✓ 2019년 1.0: 아동 1인당 일반가구 지원금액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함
    - ✓ 2022년 2.0: 아동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함
- ❖ **제도 완성을 위해 주거품질**을 연계하고, **이주배경 아동가구**를 대상에 포함하고, 수급률을 두 배 상향할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예산 제약으로 실행이 어려움
  - 아동가구에 대해서는 **주거품질 기준을 연계**하여 주거비를 지급함
    - ✓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지하-옥탑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주거상황을 연계함(다자녀 매입임대 확보 필요)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의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주민'**으로 조례 개정 없이 외국인가구를 포함할 수 있음
    - ✓ 7.2%(2024년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로 추정되는 **수급률을 15%로 상향**함
  - 이주배경 아동가구를 포함하여 수급률을 15%로 제고할 경우 연간 예산은 29.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서울형 주택바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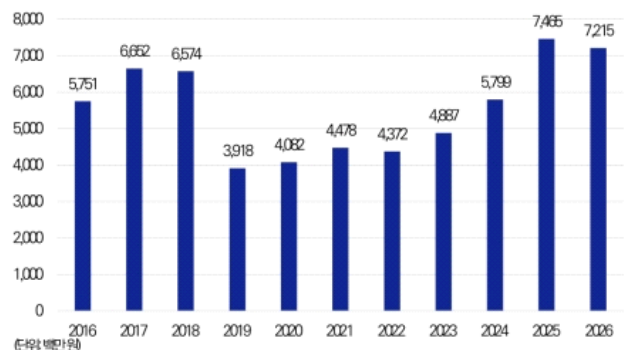
- 서울시는 2002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월세가구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시행하고 있음
- 제도 도입 당시에는 1인가구 기준 월 지원금액이 3.3만 원이었으나 2025년 이후 12만 원까지 증가함
- 서울형 주택바우처 예산은 2016년 57.5억 원에서 2017년 66.5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39.2억 원으로 감소한 후 2025년 74.7억 원까지 다시 증가했고, 2026년 72.2억 원으로 다시 감소함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액의 변화(2002~2026년)

구분	(단위: 만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2년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2008년	43,000	43,000	52,000	52,000	65,000	65,000
2013년	43,000	47,500	52,000	58,500	65,000	72,500
2016년	50,000	55,000	60,000	65,000	70,000	75,000
2020년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105,000
2025년	120,000	130,000	140,000	150,000	160,000	170,000

자료: 서울시장개발연구원(201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  
장: 사전공개정보.

서울형 주택바우처 예산의 변화(2016~2026년)



자료: 지방재정365, 세무사업별 세출현황.  
주: 1) 2016~2025년은 집행액, 2026년은 예산현액 기준임.  
2) (일반바우처분 아니라 주거상황 특정바우처, 아동 특정바우처, 빈지하 특정바우처를 합산한 금액임.

## 서울시의 아동가구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 ❖ 아동 특정바우처

- 2021년부터 '아동 특정바우처'를 신설하여 현재는 아동가구에 1인당 6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 아동 특정바우처는 2021년 도입 당시 아동 1인당 4만 원이었으나, 2025년 6만 원으로 상향됨
- 주택바우처의 기본 지원금액은 2인가구 13만 원, 3인가구 14만 원, 4인가구 15만 원임
- 아동 특정바우처를 합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액은 자녀가 1명인 2인가구는 19.0만 원, 3인가구는 20.0만 원, 자녀가 2명인 4인가구는 27.0만 원임

###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2025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월 30만 원 한도의 주거비(월세 또는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함
-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가구로, 자녀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함
- 월세 가구의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의 주거비도 포함하여 지원함
- 쌍태아를 출산한 경우 지원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자녀를 추가로 출산한 경우 1명당 1년을 추가로 지원함
- 자녀출산 외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가 5억 원(월세환산가 229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임
-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버팀목대출,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중앙정부·서울시 주거지원 정책을 이용 중인 가구는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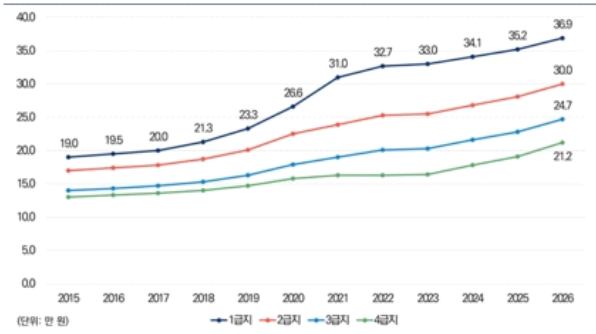
# V

## 주거급여법 개정 관련 쟁점



## 기준임대료로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 윤석열 정부의 기준임대료 인상폭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 작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가구원수와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특별자치시·특례시(3급지), 기타(4급지) 4개 급지별로 차등화됨. 여기서는 1인가구 기준임대료를 살펴봄
- 문재인 정부에서 1급지인 서울시의 기준임대료는 2019년 23.3만 원에서 2020년 2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만 원, 2021년 3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만 원 인상함
- 윤석열 정부는 1급지인 서울시의 기준임대료를 2022년 32.7만 원에서 2023년 33.0만 원으로 3,000원 인상하였는데, 이는 2015년 개별급여 도입 이후 역대 최저치임. 2024~2025년은 34.1만 원에서 35.2만 원으로 인상하여, 전년 대비 1.1만 원 인상함
- 이재명 정부는 2026년 1급지 기준임대료를 36.9만 원으로 전년보다 1.7만 원(4.8%) 인상함

## 기준임대료로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빈곤비즈니스의 양분이 되고 있다

- 적정 품질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보다 낮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여 수급가구가 지하,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함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입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

2026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 가구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가구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가구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가구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가구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가구	699,000	568,000	463,000	402,000

• 가구원 수가 7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출처: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는 최저 소득 계층에 대한 잔여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소득 기준이 낮음

(단위: 만가구,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선정기준	43%					44%	45%		46%	47%	48%
일반가구(A)	1,956.1	1,983.8	2,016.8	2,050.0	2,089.1	2,148.5	2,144.8	2,177.3	2,207.3	2,218.0	
전체수급가구(B)	80.0	80.4	81.0	94.0	104.0	118.9	127.3	134.5	141.5	148.3	
임차급여	72.2	72.7	73.7	85.7	95.3	109.3	116.5	123.2	130.8	138.0	
자가급여	7.8	7.7	7.3	8.3	8.8	9.6	10.8	11.3	10.7	10.4	
수급비율 (C=B/A)	4.2%	4.1%	4.1%	4.7%	5.1%	5.7%	5.9%	6.2%	6.4%	6.7%	

출처: 2025년 주거급여 소위 회피자료.

주: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는 연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월별 통계자료의 매년 12월말 기준 값임

자료: 2015 ~ 2023년 일반가구는 통계청 총조사 가구 일반가구; 2024년 일반가구는 통계청 생애가구추계 일반가구, 전국

##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도 문제지만 자기부담금도 문제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넘는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
- 임차급여 자기부담금 산식: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자산, 자동차 등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됨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종위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종위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종위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종위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2026년 임차급여 가구원수별 최대 자기부담분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최대 자기부담분 (주거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 선정기준)×0.3	123,083	201,566	257,234	311,747	362,723	410,686

## 주거급여 수급 아동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2016~2024년 주거급여 수급 아동가구는 116,849 가구에서 145,504가구로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에서 아동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8%에서 10.5%로 감소함

\*아동가구는 18세 미만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된 가구를 의미함

(단위:가구,%)

구분	소계			임차			자가		
	전체가구	아동가구	비율	전체가구	아동가구	비율	전체가구	아동가구	비율
2016년	740,487	116,849	15.8	722,687	115,129	15.9	17,801	1,721	9.7
2017년	745,892	105,225	14.1	731,585	104,224	14.2	14,312	1,001	7.0
2018년	862,621	108,964	12.6	849,357	108,142	12.7	13,264	822	6.2
2019년	963,468	113,919	11.8	944,513	112,855	11.9	18,962	1,064	5.6
2020년	1,098,594	130,987	11.9	1,082,663	130,204	12.0	15,931	783	4.9
2021년	1,171,474	136,700	11.7	1,155,320	135,673	11.7	16,155	1,027	6.4
2022년	1,218,772	134,812	11.1	1,207,896	134,280	11.1	10,876	532	4.9
2023년	1,310,404	141,559	10.8	1,294,234	140,783	10.9	16,171	776	4.8
2024년	1,385,145	145,504	10.5	1,367,639	144,616	10.6	17,508	888	5.1

출처: 박용갑의원실  
기준: 매년 12월 기준

53

## 이재명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25 ~)

국정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 서민·실수요자 등을 위한 공적주택 110만호 안정적 공급
- ▶ 민간주택 신속공급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국정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 ▶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 주거 취약계층·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두터운 주거안전망 구축

### (균형 성장) 모두가 잘 사는 국토 공간 조성

- 경쟁력 있는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
-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 및 균형성장 거점 고도화
- 침체된 지방 활력 제고를 통한 쉰 국토의 공정 성장 지원

### (주거 안정)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

-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 임기 내 명실상부한 주거복지 선도국가 완성
-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부동산 시장 건전성 제고

주요

54

## 이재명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무주택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보장수준이 낮고 주거품질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주거급여로는 지하·옥탑·고시원과 쪽방을 벗어나기 어려움. 주거급여를 주거품질과 연계하도록 설계하여 수급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함
- 미래세대인 청년가구와 아동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보다 소득기준을 상향해서 주거비를 지원해야 함
- 주거복지 정책에서의 기초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재건축부담금 등 재원을 확대해야 함
- 쪽방, 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이전,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비적정주거 거주를 해소해야 함
- 불법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불법행위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빈곤비즈니스를 방지해야 함
-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함

## 주거급여법 개정 관련 쟁점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현행 주거급여 틀 안에서 할 것인가? 청년 월세 지원처럼 별도로 할 것인가?

주거급여 틀 안에서 한다면 자기부담금 문제로 과소 지원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품질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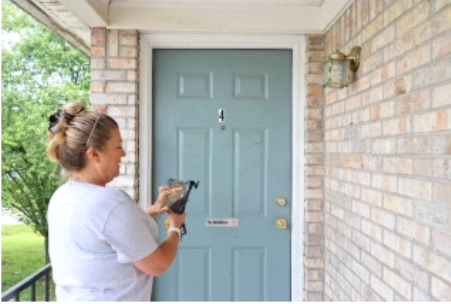
주거품질과 연계한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예산과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미국 주택 바우처의 주택품질 검사

NSPIRE(National Standards for the Physical Inspection of Real Estate)



- 도입 기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 시행 시기: 2023년 공식 시행
- 대상: 공공주택·섹션8 프로그램 등 HUD 지원 부동산
- 검사 영역: 단위(unit), 건물(building), 부지(site)
- 핵심 초점: 거주자 건강, 안전, 주거 품질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필수입니다.



검사관은 곰팡이/곰팡이를 감지하기 위해 스펙도계나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들은 접근 가능한 모든 전기 콘센트를 점검할 것입니다.

## 주거급여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LH공사, 지자체의 인력 및 운영 비용 확대

- LH가 손실을 떠 맡아 주거급여 사업을 추진 중임
- '공공임대주택 공급 → 부채비용 증가 → 경영평가 불이익'의 악순환으로 **주거복지 사업 추진동력 약화**
- 주거급여 업무는 LH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업무라는 인식이 부족함 →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
- 인력 지원 없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주거복지 업무 부담 가중



○ (사업손실) 부족한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연평균 65억 손실 발생(총누적 654억)\*

구분	소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사업비 (억원)	총사업비	3,420	229	267	267	402	361	384	373	386	383	368
	국고보조	2,766	137	177	198	288	288	302	346	347	347	336
	주택조사	2,413	119	155	173	257	257	268	298	299	299	288
	자가개발	353	18	22	25	31	31	34	48	48	48	48
	LH자체투입*	654	92	90	69	114	73	82	27	39	36	32
	국고보조율	81%	60%	66%	74%	72%	80%	79%	93%	90%	91%	91%

\* 국고로 보전되지 않는 일반적 인건비, 근무지역비 등을 포함시 총 손실액 1,799억

출처: LH내부자료

## 주거비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주거비 지원 시 주택품질에 대해 세밀하고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주택품질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주거권 보장에 있어 한계가 명확함
- 주거권 보장이라는 원칙없이 설계된 주거급여의 재설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인력과 조직 확충: 국토교통부, LH공사,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거복지센터
  - 현재 급지간 기준임대료 차이가 큰데, 지역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지체계 전면 개편. 주택보급률이 높아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3급지, 4급지에서 주거품질과 주거급여 연계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
  - 주거권 보장보다는 예산에 의해 제약받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주거급여 소위의 의사결정 과정 개선
- 시흥, 서울, 전주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주거비 지원에서 아동 가구의 소외가 여전함. 아동, 청년 등 미래 세대 대상의 주거상황을 전제로 하는 바우처 신설이 필요함
  -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100%로의 상향 검토 필요)로 기준이 상향되어야 아동가구가 주거비 지원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을 수 있음
  -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제가 폐지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30대 미만의 청년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독립 가구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미래 세대인 청년 대상의 주택바우처 신설 필요성도 큼(2021년 부터 원가구가 수급가구인 30대 미만은 주거급여 수급대상이 됨)
  -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한시지원이라는 한계가 있음

## 주거품질과 연계되도록 주거급여를 재설계하자

### ❖ 주거급여 대상 확대

- 주거권 보장이 목적인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한계가 있음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임(1인가구는 170% 이하, 맞벌이 신혼가구는 190% 이하)
  - 현행 주거급여의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이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해, 상대적 빈곤선(국제적으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미달하는 가구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주거급여는 근로빈곤층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아동가구와 청년가구의 수급 비율이 낮음. 유럽연합(EU)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만 가처분소득이 가구균등화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을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로 정의함

### ❖ 빈곤비즈니스 근절을 위한 주택의 품질 규제 도입 및 관리비 지원

- 프랑스 처럼 주거품질 준수를 위한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 관리비를 주거급여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 중인데, 이를 주거품질과 연계해서 쪽방, 고시원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미지급하는 방안
- 주거상황과 주거품질 충족을 전제로 임대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 논의

## 주거급여법 개정을 통해 주거품질과 연계한 아동가구 주거수당을 신설하자

-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 임차가구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68,353가구 → 재산의 소득환산 미반영)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비수급 임차가구 (전세+월세 가구, 주거급여에서 포괄하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제외)
- 지원 금액: 월평균 30만 원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를 기본 지급액으로 하고,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아동 1인당 기본 지급액의 30%를 가산하는 시흥형 주거비지원을 고려한 금액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30만원 지급시 1년차 1,476억 원, 2년차 1,722억 원, 3년차 1,96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3년차 예산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9,185억 원, 100% 이하 1조 5,461억 원)
  -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시 1년차 1,969억 원, 2년차 2,230억 원, 3년차부터는 2,6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소득 기준 및 신청률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구분		1년차(신청률 60%)	2년차(신청률 70%)	3년차(신청률 80%)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본(30만 원)	147,642백만원	172,249백만원	196,856백만원
	주거상향(40만 원)	196,856백만원	229,666백만원	262,475백만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본(30만 원)	516,633백만원	602,738백만원	688,844백만원
	주거상향(40만 원)	688,844백만원	803,651백만원	918,458백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본(30만 원)	869,708백만원	1,014,659백만원	1,159,610백만원
	주거상향(40만 원)	1,159,610백만원	1,352,879백만원	1,546,147백만원

# 발제 2

---

아동가구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비 보조 정책 수단 검토

이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

2026. 05. 07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

# 아동가구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비 보조 정책 수단 검토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

KRIHS

2026

## CONTENTS

### 목 차

#### 01 — 아동가구 주거비 보조의 필요성

아동 주거권과 주거비 보조의 정책적 의미

#### 02 — 아동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선결 과제

주거급여를 통한 주거비 지원의 장점과 한계

#### 03 — 대안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주택수당

대안적 정책수단으로 주택수당의 가능성 모색

#### 04 — 결론과 정책 제언

이중구조 주거안전망 구축 방향

# 01

## 아동가구 주거비 보조의 필요성

아동 주거권의 의의와 주거비 보조의 정책적 함의

PART ONE

### 0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아동에게 주거는 '권리'이다

아동은 주거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으로, 주거 환경의 영향을 성인보다 훨씬 크게 받는다.

#### UN 아동권리협약 제27조 (1989)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나 기타 주체가 이 권리를 실현하도록 적절히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국내의 규범 동향

UN-Habitat (2015) 주거빈곤 아동을 '특별한 집단'으로 명시  
UN 아동권리위원회 (2019) 한국에 아동 주거빈곤 평가·해결 권고  
정부 (2019)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자료: 임세희, 송아영. 2020.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해외 동향: 최저주거기준과 연계된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1. 시흥형 주거비 지원대상 아동가구 사례조사 및 정책효과 연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 KEY MESSAGE

주거권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며, 아동에게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주거 환경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학업, 사회성에 전 생애적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종종 불가역적이다.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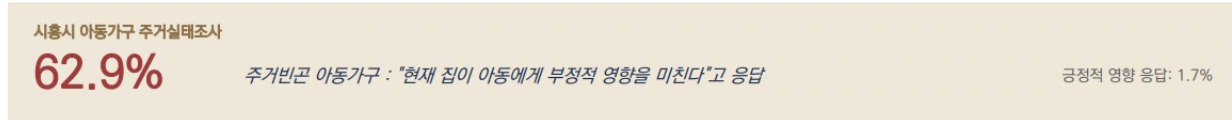
4 / 29

0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주거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주거빈곤의 영향은 단기·표면적이지 않으며, 다층적이고 종종 불가역적이다.

 <p><b>신체 건강</b> 습기·곰팡이로 인한 비염·호흡기 질환, 해충으로 인한 피부병, 열악한 난방으로 인한 저체온</p>	 <p><b>정신 건강</b> 자기 공간의 부재, 과밀로 인한 가족 간 갈등, 주거환경에 대한 수치심</p>
 <p><b>학업 성취</b> 학습 공간의 부재,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 진행 불가</p>	 <p><b>사회성 발달</b> 집에 친구를 초대할 수 없어 또래 관계가 위축되는 현상</p>



자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1. 시흥형 주거비 지원대상 아동가구 사례조사 및 정책효과 연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5 / 29

CASE STUDY

### 열악한 거처-다자녀 아동 가구 주거급여 수급 사례

가구 유형

다자녀 가구 (부부 + 아동 3인)

주요 상황

넓고 좁은 주거 환경 + 월세 부담

수급 내용

임차급여 수령 (주거급여)

#### 주거급여가 가져온 변화

식비·생활비 여유 / 아이들의 방 마련 / 가족 관계 회복

2024년 주거급여 수급 공모전 : 사례

## 주거안정과 가족관계 회복

### 수급 전 주거실태 "주거 빈곤과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사회적 고립 경험"

한겨울이면 춥고 어두운 집.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벽지엔 곰팡이가 피었다. 아이 셋이 방 한 칸에 웅크려 잠들고,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는 일상. 월세와 생활비로 빠듯한 형편속에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자책이 이어졌다.

### 제도 접근 경로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

어느 날 동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처음엔 반신 반의 했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를 붙잡고 신청서를 냈다. 몇 주 뒤 승인 연락을 받고 아내와 함께 새 집을 찾아 다니기 시작했다.

### 수급 이후 변화 "양호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가족관계 회복"

이사 첫날, 아이들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 찼다. 각자의 방을 갖게 된 아이들은 밝아졌고, 월세 부담이 줄며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막내의 생일 파티, 가족 외식, 함께 보내는 저녁 — 집이 가족의 꿈을 키우는 터전이 되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차료 지원이 아니다 — 집은 가족이 함께 꿈을 키우고 사랑을 나누는 터전이다

CASE STUDY

## 퇴거위기-다자녀 가구 주거급여 수급 사례

가구 유형

다자녀 가구 (부부 + 자녀 5인, 1남 4녀)

주요 상황

남편 주식 손실로 인한 재정 위기 + 임대료 연체 위기

수급 내용

임차급여 수령 (LH 임대주택 거주)

### 주거급여가 가져온 변화

임대료 걱정 해소 / 아픈 아이 곁에서 돌볼 가능 / 막내 출산과 가족 웃음 회복

2024년 주거급여 수급 공모전 : 사례

## 주거불안 및 돌봄 환경 개선

### 수급 전 주거실태 "재정위기와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불안 경험"

남편의 주식 투자 실패로 전세금마저 담보로 잡혔다. 카드 결제일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일이면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연체 안내방송이 두려웠다. 전세금마저 담보로 잡혀 있어 어린 다섯 아이를 데리고 갈 곳도, 집을 구할 돈도 없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게 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엄습했다.

### 제도 접근 경로 "지인을 통해 주거급여 제도 인지"

지인을 통해 주거급여를 알게 되어 신청했고, 감사하게도 급여 대상자가 되었다. 매달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되자 큰 짐이 벗겨진 듯한 안도감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 남편도 마루 시공이라는 새로운 일을 배우며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 수급 이후 변화 "주거비의 안정적 납부, 돌봄 환경 개선, 가족 확대 및 정서적 안정 확보"

천식을 앓는 넷째 곁에서 일하지 않고 돌볼 수 있었던 것도 주거급여 덕분이었다. 올해 4월 막내가 태어나 일곱 가족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주거가 해결되기에 행복 또한 시작될 수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차료 지원이 아니다 — 주거가 해결되기에 가족의 행복 또한 시작될 수 있다

CASE STUDY

## 아동 싱글맘 가구 주거급여 수급 사례

가구 유형

한부모 가구 (싱글맘 + 아동 1인)

주요 상황

이혼 후 채무 상환 + 육아 전담

수급 내용

주거급여 · 양육수당 수령

### 주거급여가 가져온 변화

식비·학원비 충당 / 소액 저축 시작 / 심리적 안정감 회복

2024년 주거급여 수급 공모전 : 사례

## 한부모 가구의 주거안정 도모 및 자립 도전

### 수급 전 주거실태 "주거 불안정 및 한부모 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심리적 고립 경험"

이혼 후 채무 상환과 육아를 홀로 감당. 복지 혜택을 '능력 없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여기며 오만함과 수치심으로 거부. 직장 내 차별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다. 번 돈의 반은 빚 탕감으로 쓰였고 남은 돈으로 어린 아이와 허름한 연세집에서 살았다.

### 제도 접근 경로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및 양육수당 제도 인지"

지친 일상 속 이웃의 작은 온기들 — 상처 난 모과, 정비소 사장의 배려, 직장 동료의 손길 — 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새로운 직장에 정착함과 동시에 마을속에서 일어났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용기를 내서 주민센터를 찾았다. 직원은 친절했고,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찾아주고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다.

### 수급 이후 변화 "월세부담 경감, 저축 시작 및 자립 준비"

용기 내어 주민센터를 찾은 후 주거급여 수급 승인. 매월 정기 입금되는 급여로 식비·학원비 충당과 저축이 가능해졌다. 작은 투움으로 이사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고,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며 탈수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다 — 안정된 귀가처가 곧 아이가 자라는 토양이다

CASE STUDY

## 가정폭력 피해 모녀 가구 주거급여 수급 사례

가구 유형

한부모 가구 (싱글맘 + 자녀 1인)

주요 상황

가정폭력 피해 후 보호쉼터 생활 + LH 전세임대 연계

수급 내용

주거급여 · 생계급여 수급 (LH 전세임대)

### 주거급여가 가져온 변화

안전한 보금자리 확보 / 아이 치유·교육에 집중 /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 기대

2024년 주거급여 수급 공모전 · 사례

## 주거안정 및 자녀 양육환경 개선과 심리적 안정 확보

### 수급 전 주거실태 "전세사기 피해와 가정폭력으로 보호쉼터 입소"

2015년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 출산 후 배우자의 폭력으로 집을 뛰쳐나와 보호쉼터에 입소했다. 낯선 환경에서 9개월을 버티며 자녀에게는 여행이라고 설명하고 웃음을 지켰다.

### 제도 접근 경로 "보호쉼터를 통해 LH전세임대주택 및 주거·생계급여 제도 인지"

쉼터는 퇴소 후 LH 전세임대 연계와 자립 기반을 약속해주었다. 드디어 순서가 돌아왔고, 믿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기에 바로 계약했다. 언니 가족의 도움으로 입주 청소와 아이 방을 꾸미며 새 출발을 준비했다.

### 수급 이후 변화 "안정적인 주거 확보, 자녀 양육 환경 개선, 심리적 안정 가능"

전임신고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 주거 안정이 생기자 자녀 치유·교육에 눈이 트이고 청약까지 그릴 수 있었다. 예비순위 1번으로 당첨되어 이제 저희 모녀만의 진짜 보금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차로 지원이 아니다 — 주거의 안정이 있기에 치유도, 내일의 꿈도 시작될 수 있다

### 0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아동가구에게 주거비 보조가 필요한 이유

아동 주거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주거비 보조(현금이전)의 핵심성

### 01

#### 아동가구의 열악한 주거 여건과 복합적인 주거 욕구

불행한 사건을 겪은 후 경제적 위기 및 부채로 인해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워 열악한 주택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와 같은 곳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은 연령이나 가구 구성에 따라 필요한 주거 욕구는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충분한 채광과 환기, 온수 사용이 가능한 단독 화장실, 사생활이 보장되는 독립적 주거 공간 등을 필요로 하고, 아동가구의 경우 방 수가 많은 주택을 선호하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는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 거주하고자 함

### 02

#### 아동가구의 주거비 부담 문제

재정적 위기로 인한 임대료 연체 및 퇴거 위기의 상황에서 주거비 보조 제도는 퇴거 위험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가능하게 함(아동가구의 부모는 경제활동 제약)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황 지원사업이나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에도 주거비 보조 제도가 안정적 거주 기반이 됨

### 03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

공공임대주택의 연간 공급 물량과 재고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 아동가구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갖추더라도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실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

### 04

#### 주거 선택권의 보장

아동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공간 크기와 위치가 달라지는 특성상, 고정된 공공임대주택보다 임차시장에서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현금 보조가 더 적합할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고 물량 및 입지의 한계 때문에, 주거비 보조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02

## 아동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선결과제

주거급여를 통한 주거비 지원의 장점과 한계

PART TWO

### 02. 아동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선결과제

##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및 운영 현황

#### 제도적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제도 발전 경과

-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 함께 신설
- 2015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 독립 운영
- 201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도입
- 2026 기준중위소득 48% 적용 (1인 1인 36.9만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추이

(단위: 만 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5년 80.0만 가구에서 '25년 161.7만 가구로 증가

주거급여 제도는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전환 이후 선정기준 상향('15년 43% → '26년 48%)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해 수급가구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

## 아동양육 수급가구 분석의 기본가정

<b>분석자료</b>	2025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LH 주거급여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행복e음
<b>주요 개념과 가정</b>	<p><b>아동양육가구의 구성</b></p> <p>부부가구-아동양육 : 배우자가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한부모가구-일반 : 배우자가 없으며,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고 가구주 나이가 25세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구-청소년 : 배우자가 없으며, 18세 미만 자녀만 동거하고, 가구주 나이가 24세 이하인 가구                  조손가구 :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18세 미만 손자녀가 있는 가구                  단, 가구주 연령이 10세 이하인 2.84가구는 분석에서 제외</p> <p><b>경상소득</b></p> <p>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의 합계이며,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생계급여만 포함한 값을 의미</p> <p><b>결측 처리</b></p> <p>소득인정액,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경상소득, 주거급여액이 결측인 경우 또는 실제임차료와 주거급여액이 0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p>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아동양육가구 특성 분석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아동양육 가구 현황: 가구 구성

- 주거급여 수급 아동양육 가구는 12.8만 가구이며, 그 중 80.7%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주거급여 수급 아동양육 가구 중 한부모가구(일반) 가구가 10.0만(77.6%) 수준
  - 한부모(일반)가구가 10.0만 가구로 주거급여 수급 아동양육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부부-아동양육 가구가 2.7만, 조손 아동양육 가구가 915가구, 한부모(청소년) 가구가 762가구 순서임
  - 주거급여 수급 아동양육 가구는 가구 구성에 관계없이 모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중이 가장 높음

구분	일반가구		아동양육가구		부부가구-아동양육		한부모-일반		한부모-청소년		조손가구-아동양육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체	1,339,734	100.0	128,484	100.0	27,134	100.0	99,673	100.0	762	100.0	915	100.0
30% 이하	1,217,690	90.9	103,656	80.7	21,296	78.5	80,802	81.1	716	94.0	842	92.0
30% 초과~40% 이하	92,337	6.9	18,154	14.1	4,276	15.8	13,799	13.8	25	3.3	54	5.9
40% 초과	29,707	2.2	6,687	5.2	1,562	5.8	5,070	5.1	36	4.7	19	2.1

주1: 아동양육가구는 가구주 본인과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함  
 주2: 한부모-일반가구는 배우자가 없으며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가구주 나이가 25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주3: 한부모-청소년가구는 배우자가 없으며, 18세 미만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가구주 나이가 24세 이하인 가구를 의미함  
 주4: 조손가구는 65세 이상 가구주 본인과 배우자, 손자녀(손·외손)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정보시스템(2025.12)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아동양육가구 특성 분석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아동양육 가구 현황: 가구원수별 분포

**가구원수별: 3인 가구 → 5.0만(35.7%), 2인 가구 → 4.4만(31.4%) 수준**

- 주거급여 수급 아동양육 가구 중 2인 가구의 규모가 큰 편인데, 이는 부부 아동양육 가구보다 한부모(일반 및 청소년)가구의 규모가 컸던 분석결과와 관련
- 조손 아동양육 가구에서도 3인 가구보다 2인 가구가 더 많아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이 혼자 아동을 양육하는 수급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

구분	일반가구		아동양육가구		부부가구-아동양육		한부모-일반		한부모-청소년		조손가구-아동양육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체	1,339,741	100.0	128,484	100.0	27,134	100.0	99,673	100.0	762	100.0	915	100.0
1인	1,065,694	79.5	0	0.0	0	0.0	0	0.0	0	0.0	0	0.0
2인	197,719	14.8	44,114	34.3	0	0.0	43,014	43.2	595	78.1	505	55.2
3인	48,646	3.6	49,636	38.6	9,214	34.0	39,974	40.1	136	17.8	312	34.1
4인	17,994	1.3	24,595	19.1	11,016	40.6	13,472	13.5	22	2.9	85	9.3
5인	6,671	0.5	7,744	6.0	5,178	19.1	2,545	2.6	8	1.0	13	1.4
6인 이상	3,017	0.2	2,395	1.9	1,726	6.4	668	0.7	1	0.1	0	0.0

주1: 아동양육가구는 가구주 본인과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함  
 주2: 한부모-일반가구는 배우자가 없으며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가구주 나이가 25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주3: 한부모-청소년가구는 배우자가 없으며, 18세 미만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가구주 나이가 24세 이하인 가구를 의미함  
 주4: 조손가구는 65세 이상 가구주 본인과 배우자, 손자녀(손 외손)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정보시스템(2025.12)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아동양육가구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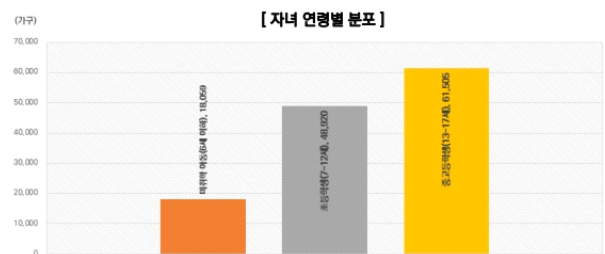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아동양육 가구 현황: 가구주 및 자녀 연령별 분포

**가구주 연령별: 40대 가구 → 6.4만 가구(50.1%)**

- 주거급여 수급 아동양육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6.4만 가구, 30대가 3.0만 가구, 50대가 2.6만 가구 순임

**자녀 연령별 분포: 중고등학생 양육가구 → 6.2만 가구(47.9%)**

- 주거급여 수급 아동양육 가구의 자녀 연령별 분포는 중고등학생(13~17세) 6.2만 가구, 초등학생(7~2세) 4.9만 가구, 미취학 아동(6세 이하) 1.8만 가구 순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정보시스템(2025.12)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아동양육가구 특성 분석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아동양육 가구 현황: 급지별 및 거주유형별 분포

### 급지별: 아동양육 가구 → 2급지 4.0만

- 주거급여 수급 아동양육 가구는 2급지 4.0만, 4급지 3.9만 순
- 이는 일반가구가 2급지 3.7만, 3급지 3.6만의 분포를 보이는 것과 차이
- 1급지의 비중이 작으며, 이는 소득-자산 기준의 엄격성 때문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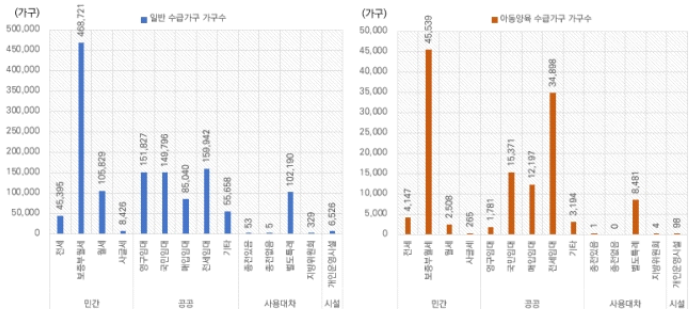
### 거주유형별: 공공임대 → 6.7만(52.5%)

- 공공임대 비중이 높아, 일반가구의 46.9%가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것과 차이를 보임
- 공공임대 중 전세임대 거주가구가 3.5만으로 영구, 국민, 매입임대 등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현저히 많음 (전세임대 > 매입임대 > 국민임대 > 영구임대 순)

【급지별 분포】

구분	일반가구		아동양육가구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체	1,339,741	100.0	128,484	100.0
1급지	291,148	21.7	15,881	12.4
2급지	365,537	27.3	39,707	30.9
3급지	364,967	27.2	33,687	26.2
4급지	318,089	23.7	39,209	30.5

【거주유형별 분포】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정보시스템(2025.12)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아동양육가구 특성 분석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아동양육 가구 현황: 소득인정액, 주거급여액 등

### 소득인정액 → 80.8만원, 주거급여액 → 26.5만원, 기준임대료 → 32.8만원, 실제임차료 → 40.1만원 수준

- 일반 수급가구와 비교해 소득인정액 및 주거급여액,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경상소득이 높은 편, 이는 가구원수 영향일 수 있음(일반 수급가구 1.29명, 아동양육 수급가구 3.03명)
- 주거급여 수급 아동양육 가구 중 부부 아동양육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경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인정액 및 주거급여액 등이 높은 상황
- 한부모 청소년 양육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상소득(생계급여 포함)은 가장 높은 수준
- 한부모 청소년 양육가구와 조손 아동양육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를 제외한 경상소득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손가구의 실제임차료 수준이 가장 낮음

구분	소득인정액	주거급여액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경상소득	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생계)
일반 수급가구	377,129	200,713	270,354	248,748	933,117	
아동양육 수급가구	808,084	265,021	327,733	400,641	1,988,728	1,509,022
부부가구-아동양육	1,103,064	296,487	375,253	439,189	1,103,064	1,001,692
한부모가구-일반	726,762	256,275	314,230	390,635	1,957,487	1,003,902
한부모가구-청소년	322,278	245,304	287,232	361,002	1,998,728	640,792
조손가구-아동양육	540,823	223,927	302,014	288,336	1,642,668	178,664

주1: 아동양육가구는 가구주 본인과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함  
 주2: 한부모-일반가구는 배우자가 없으며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가구주 나이가 25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주3: 한부모-청소년가구는 배우자가 없으며, 18세 미만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가구주 나이가 24세 이하인 가구를 의미함  
 주4: 조손가구는 65세 이상 가구주 본인과 배우자, 손자녀(손 외손)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정보시스템(2025.12)

02. 아동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선결과제

## 주거급여를 통한 주거비 지원의 장점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체계 내에서 주거급여가 갖는 강점

### ✓ 법정 권리로서 수급 안정성 보장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한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권리급여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수혜 규모가 달라지는 재량적 지원과 달리, 수급 자격을 갖춘 아동가구는 반드시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음

### ✓ 기존 전달체계 및 소득 자산 검증 시스템 활용 가능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할 경우 별도의 제도 설계나 전달 인프라 구축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기존 체계를 그대로 활용 가능. 새로운 주택수당 제도를 만들려면 법령 정비, 전달체계 구축, 인력 확보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 ✓ 가구원 수 및 지역별 세분화된 급여 체계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와 지역(4급지)을 기준으로 차등화 되어 있으므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규모와 거주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어느 정도 반영 가능

### ✓ 타 급여와 연계로 복합적 빈곤에 대응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 주거 문제가 심각한 아동가구는 대개 소득·의료·교육 등 복합적인 결핍을 동시에 경험하는데 주거급여 수급 시 다른 급여와 연계 가능하며, 수급이력이 사회안전망 재진입의 경로가 됨

**그러나 이러한 주거급여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라는 제도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02. 아동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선결과제

## 한계 ① 임차급여 자기부담분

### ① 임차급여 자기부담분으로 인해 낮은 임차급여액 지급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초과 시,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일수록 임차급여액이 줄어드는 구조 임차급여 자기부담분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선정기준을 상향하면 자기부담분이 증가함으로써, 자기부담분이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최저지급액 1만원 지급)

[ 소득인정액이 48%일 때 임차급여 자기부담분 ]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8%) : A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 B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자기부담분 : (A-B) * 0.3	123,083	201,566	257,234	311,747	362,723	410,686

[ 소득인정액이 48%일 때 임차급여액 상한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급지(서울)	245,917	212,434	234,766	259,253	228,277	288,314
2급지(경기·인천)	176,917	133,434	143,766	151,253	116,277	157,314
3급지(광역 세종시)	123,917	73,434	69,766	69,253	31,277	52,314
4급지(그외 지역)	88,917	36,434	25,766	17,253	-22,723	-8,686

## 한계 ① 임차급여 자기부담분

### ① 임차급여 자기부담분으로 인해 낮은 임차급여액 지급

현행 자기부담분이 유지되는 경우,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상향하더라도 실제 지급가능한 임차급여액은 크지 않은 문제가 발생

[ 소득인정액이 60%일 때 임차급여액 상한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급지(서울)	153,604	61,259	41,841	25,442	-43,764	-19,700
2급지(경기·인천)	84,604	-17,741	-49,159	-82,558	-155,764	-150,700
3급지(광역·세종시)	31,604	-77,741	-123,159	-164,558	-240,764	-255,700
4급지(그외 지역)	-3,396	-114,741	-167,159	-216,558	-294,764	-316,700

[ 소득인정액이 80%일 때 임차급여액 상한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급지(서울)	-250	-190,698	-279,701	-364,242	-497,168	-533,057
2급지(경기·인천)	-69,250	-269,698	-370,701	-472,242	-609,168	-664,057
3급지(광역·세종시)	-122,250	-329,698	-444,701	-554,242	-694,168	-769,057
4급지(그외 지역)	-167,250	-366,698	-488,701	-606,242	-748,168	-830,057

## 개선 ① 임차급여 자기부담분 → 완화 방안 검토

### ①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기준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 상한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수선비용의 일정 비율(10~20%)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급여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하는 방안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대해 기준임대료 50% + α 지원

[ 주거급여 자기부담분 개선 방안 : 예시 ]

구분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기준임대료의 100% 지원	수선비용의 100% 지원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임대료의 90% 지원	수선비용의 90% 지원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 기준중위소득 48%(50%) 이하	기준임대료의 80% 지원	수선비용의 80%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임대료의 70% 지원	수선비용의 70%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임대료의 60% 지원	수선비용의 60% 지원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임대료의 50% 지원	수선비용의 50% 지원

주: 노란색 부분은 현행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이며, 파란색 부분은 개선방안 예시임

[ 개선방안 적용 시 소득인정액이 80%의 임차급여액 상한 : 기준임대료 50% ]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급지(서울)	184,500	207,000	246,000	285,500	295,500	349,500
2급지(경기·인천)	150,000	167,500	200,500	231,500	239,500	284,000
3급지(광역·세종시)	123,500	137,500	163,500	190,500	197,000	231,500
4급지(그외 지역)	106,000	119,000	141,500	164,500	170,000	201,000

## 한계 ② 엄격한 소득 자산 조사

### ② 엄격한 소득 자산 조사 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 위험

공공부조 특성상 자산조사(means-test)가 핵심 선별 기제로 작동하며, 주거용 재산의 공제,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자동차 기준 등으로 인해 실제로 주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가구의 상등수가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같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 개선 ② 엄격한 소득 자산 조사 → 완화 방안 검토(구조적 한계)

### ② 자동차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 등 완화 방안 검토

아동 양육가구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1급지(서울)의 비중이 일반 수급가구의 비중을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은 기본 재산 공제액(주거용)이 낮은 것이 이유일 수 있음. 다자녀 가구 등과 같이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1급지에서 보증금 수준이 높은 주택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데, 기본재산액 공제 수준이 낮은 경우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상황 발생 또한, 아동 양육가구 특성상 자동차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는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엄격하여 이에 대한 완화 방안 검토 필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개선 방안 : 예시 ]

구분	기존	개선 (예시)
<b>기본재산액 공제</b>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급여의 종류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기본재산액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 중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의 순서대로 차감 - 1급지 (서울) : 9,900 만원 - 2급지 (경기) : 8,000 만원 - 3급지 (광역시, 세종, 창원) : 7,700 만원 - 4급지 (그 외 지역) : 5,300 만원	아동양육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 완화 적용 또는, 전반적인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 인상 및 특히, 1급지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 인상
<b>자동차 재산 기준</b>	월 100% 소득 환산율 적용 : 별도의 특례 대상 미해당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2)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자동차 등	3)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배기량 2,500cc 미만(차령 5년 이상 또는 가액 1,000만원 미만) 자동차 등
	완전 제외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 수급자의 필수적인 이동이나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는 가구별 1대에 한하여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 03

## 대안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주택수당

대안적 정책수단으로 주택수당의 가능성 모색

PART THREE

### 03. 대안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주택수당

## 주택수당의 개념과 공공부조와의 차이

#### Definition

####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소득·자산조사(means test)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특정 집단·상황(예: 아동 양육, 저소득 임차)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회수당(Social Allowance)적 제도

#### 공공부조 vs. 사회수당 비교

구분	공공부조 (주거급여)	사회수당 (주택수당)
선정 기준	엄격한 자산조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완화된 소득기준 (예: 중위 50-80%) 또는 비기여·비조사
급여 구조	기준 초과 시 즉시 탈락 (Cliff)	소득 증가에 따른 점진적 감소 (Tapered)
포괄 범위	협소한 빈곤층	차상위계층 포괄 (수혜 범위 확대)
낙인 효과	자산조사로 인한 낙인 발생	낙인 효과 최소화
권리 성격	잔여적 보충성 원리	보편적 사회권 성격

## 아동가구 주거비 지원 시 주택수당의 장점

주거급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6가지 정책적 우위

<p><b>01</b></p> <p><b>임차급여 자기부담분 문제의 근본적 해결</b></p> <p>주택수당은 임차급여에서의 자기부담분 없이 설계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가구도 실질적인 급여 수급 가능</p>	<p><b>02</b></p> <p><b>엄격한 소득-자산 기준의 완화</b></p> <p>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자산 이중기준선 방식 등 자율적인 소득-자산 기준 설계 가능</p>	<p><b>03</b></p> <p><b>신청, 수급절차의 간소화</b></p> <p>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자산 조사가 수반되어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심리적 부담이 크지만, 자산조사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간소화된 절차로 설계 가능</p>
<p><b>04</b></p> <p><b>아동수당, 양육수당 전달체계와 연계</b></p> <p>주택수당을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하나의 창구에서 신청, 수령하는 원스톱 구조로 설정함으로써 제도간 중복신청의 번거로움 또는 행정비용 완화 가능</p>	<p><b>05</b></p> <p><b>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자율적 설계 여지</b></p> <p>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주거급여와 달리 지역별 임대시장 특성과 아동가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급여 수준, 대상 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설계 가능</p>	<p><b>06</b></p> <p><b>탈수급 이후 지원 지속 구조 설계 가능</b></p> <p>공공부조인 주거급여는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지원이 끊기는 구조이지만, 주택수당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도 일정기간 지원을 유지하는 구간을 두어 재빈곤화 방지 가능</p>

## 주택수당의 설계 시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

### 주요 설계 원칙

구성 요소	제안 내용
대상 기준	중위 48~80% 이하 임차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 초과 저소득 아동가구 대상)
급여 구조	아동 수에 따른 차등화, 점진적 감소 방식
자산 조건	공공부조보다 완화된 기준, 완화된 이중기준선 방식 자산 조사 범위 최소화
급여 수준	최저주거기준 충족 적정 임차료 (지역 차등) : 임차급여와 연계하여 기준임대료의 일정비율 지급
전달체계	가족 아동수당 체계 연계, 신청 간소화

### 주거급여와의 관계 — 이중구조 구축

<p><b>Layer 2   차상위 주택수당</b></p> <p>중위 48~80%, 사회수당적 성격, 보다 넓은 계층 포괄</p>
<p><b>Layer 1   주거급여 (유지)</b></p> <p>중위 48%(50% 목표) 이하, 공공부조로서 최저주거 보장 역할 유지</p>

### 병행 추진 과제

#### 주거급여 단계 개선

임차급여 자기부담분 완화, 기준임대료의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수준 인상, 관리비 등 주거비 포함, 선정기준 중위 50%까지 단계적 확대

## Conclusion

아동 주거권은 빈곤 구제를 넘어 모든 아동의 사회적 권리(Social Right)이다.

### 01

#### 주거급여의 장점과 한계

법정권리로서 수급안정성, 기존 전달체계 활용 등 장점  
공공부조의 엄격한 자산조사와 자기부담분 구조의 단점  
주거급여에서 보증금은 주거비 부담이면서 자산인 이중성

→ 아동 주거빈곤의 실효적 해결에 한계

### 02

#### 주거급여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강화

자기부담분 완화,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 확대, 수급가구 발굴  
등을 통해 선정기준 이하 비수급 아동가구 지원 강화 필요  
아동가구 선정기준 상황과 함께 제도 내실화 필요

→ 아동가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결 과제

### 03

#### 주거급여와 주택수당의 이중 구조

주거급여(공공부조) 유지 + 주택수당(사회수당) 신설  
공공부조로서의 주거급여와 주택수당은 각각 장단점 존재  
주거급여 내실화와 함께 주택수당 신설로 두터운 지원 필요

→ 아동 주거권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결합

공공부조로서 주거급여의 강화를 넘어, 주택수당이 종합된 두터운 주거안전망으로

# 토론 1

---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_토론문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임세희

## 1. 아동주거권 보장의 필요성

- 두 분 발제자 모두 아동주거권 보장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줌
-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반대로 주거개선이 아동발달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여러 연구와 실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증명함
- 저 또한 적절한 주거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함을 지난 15년의 연구를 통해 확인함.
- 아동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또는 국민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고 생각함.

## 2. 한국의 아동주거권 실질적 미보장

- 2019년 아동주거권 보장 선언 이후 큰 변화가 없음
- 2020년 27.6만 아동가구가 주거빈곤상태임(최은영, 2026)
- 2024년 44.9만 아동가구가 적극적 최저주거기준미달 상태임(임세희, 2026)  
2.9만 아동가구는 적극적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과부담의 극빈한 중복주거빈곤 상태(임세희, 2026)
- 아동가구의 낮은 주거급여 수급률
- 2025년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아동가구는 12.8만 가구에 불과(이길제, 2026)
- 2022년 적극적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9.9%에 불과(임세희, 2025)  
적극적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과부담을 중복 경험하는 극빈주거빈곤아동 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11.2%에 그침(임세희, 2025)

### 3. 해외의 아동가구를 위한 주거급여(혹은 주거수당)

□ 한국보다 아동의 주거권 보장에 적극적인 해외 주거정책

구분	주거급여 vs 주거수당	아동 수별 차등 지원	한부모, 장애아동가구 추가 급여	소득 혹은 자산 상한선	급여액
스웨덴	-아동주거수당	-별도 규정 있음	-한부모 추가공제	-부부 합산 연소득 150,000sek(약 2390만원)이면 20%씩 감액지급한다는 규정만 존재 -따라서 상한선은 상당히 높음	-1400sek~8600sek (22만원~126만원, 지불하는 임차료에 따라 변경) -평균지급액 2,811sek(약45만원) -4인가구의 경우 100㎡까지 거주 허용
프랑스	-가족주거수당 -(20세 이하 아동까지, 단 최저임금의 55% 이하를 버는 경우)	-별도 규정 있음	다른 제도(가족부양수당, 연대활동소득, 장애아동교육수당 등)로 추가 지급	-주 거주 중인 주택 제외한 자산이 3만 유로 초과하거나, 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이 연간 9.061유로(약 1567만원)가 넘으면 2.38%씩 감액지급한다는 규정만 존재. - 따라서 상한선이 상당히 높음	-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파리에 거주하면 실제 임차료~545유로(약 94만원) - 단, 2명 초과 자녀 마다 월 65유로(약11만원) 추가
독일	-주거급여	-별도 규정 있음	-한부모 추가공제 -장애아동 추가공제	-4인 가구 기준 월 4,500€(약778만원) 이하 가구	-예, 뮌헨에 거주하면서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의 월 소득이 2.227€(약 385만원)이고 지불해야 하는 월 임대료가 1225€(약211만원)이면 691€(약119만원)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영국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의 주거요소와 아동요소의 결합 (2026년 4월부터 3자녀 이상에게도 주거급여 지급)	- 가능 (성별, 연령, 관계에 따른 침실 기준 적용하므로 실질적으로 가능)	한부모 추가 공제 - 장애아동 별도 침실 추가 인정	- 주거비가 월 £1,000정도라면 소득상한선은 약 £4,650(약 932만원) - 거주 중인 주택과 자동차등을 제외한 자산이 £16,000(약 3,200만원)이 넘으면 유니버설 크레딧 신청 불가	-4인가구 침실분리 기준에 따라 2~3개의 침실을 얻는 조건의 지역별 한도로 내 임대료 지급 -근로허용한도 소득기준선(월427£, 약 85만원)을 초과하면 55%씩 소득 공제액을 감액하여 유니버설 크레딧을 감액 지급함.

미국	-주거급여	-가능 (성별, 연령, 관계에 따른 침실 기준 적용하므로 실질적으로 가능)	-아동 가구 소득 추가 공제(아동 1인당 연 \$480) -장애 가구 소득 추가 공제(아동 1인당 연 \$480)	-지역중위소득 최대 80%까지 가능(단, 35% 이하가 75%를 차지해야 함) -중위소득 50%를 넘고 80%가 안되는 경우 지역 주택청에서 아동가구에서 우선 순위 부여 가능	-4인가구가 침실분리원칙에 따라 필요한 침실 수가 2개인지 3개인지에 따라, 지역의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급여됨 -단 자기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최소 10%에서 30%까지 있어, 이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 받음
----	-------	---	--	---	--

\*스웨덴: Stråle, J.(2025). EUROMOD Country Report – Sweden,  
Bostadsbidrag till ungdomshushåll och barnfamiljer (Korta analyser 2026:2)

\*프랑스: Bouvard, L.(2025) EUROMOD Country Report – France

\*독일: Beispiele für die Berechnung des Wohngelds (2026. 5.2. 인출). <https://www.finanz.de/news/artikel-10202/> (2026. 5.2. 인출)

\*미국:  
<https://www.ecfr.gov/current/title-24/subtitle-A/part-5/subpart-F/subject-group-ECFR174c6349abd095d/section-5.611> (2026. 5. 2.인출)  
§ 982.207 Waiting list: Local preferences in admission to program.(2026. 5.2. 인출) <https://www.ecfr.gov/current/title-24/section-5.628> (2026. 5.2. 인출)

\*영국: Benefit and pension rates 2026/2027. (2026.5.2.인출)  
Guidance Universal Credit payments for more than 2 children before 6 April 2026: information for stakeholders Updated 22 April 2026 (2026. 5.2. 인출). [https://www.gov.uk/universal-credit/how-your-wages-affect-your-payments\(2026.5.2.인출\)](https://www.gov.uk/universal-credit/how-your-wages-affect-your-payments(2026.5.2.인출))

\*각국의 환율은 2026. 5.3. 기준.

#### □ 침실분리 기준의 적용

- 매우 적극적인 스웨덴에서 소극적인 미국까지 차이는 있으나 침실분리기준은 최소한 지키려고 함
- 현재 한국은 주거급여는 가구원수 기준 급여로 성별, 연령, 가구원의 관계를 고려한 침실분리기준이 급여에 미반영됨

#### □ 소득과 자산의 높은 상한선(cutoff)

- 아동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자산의 상한선(cutoff)이 한국보다 높음
- 스웨덴과 프랑스는 소득상한선을 설정하지 않고, 주거욕구에 맞는 임대료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 증가에 따라 지원금이 조금씩 감액하도록 설정하고 있음
- 독일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500€(약778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함
- 잔여적 복지국가인 미국과 영국조차 자신이 거주하는 집과 사용중인 자동차를 자산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 가장 잔여적인 미국조차 지역중위소득 80%까지 지원을 허용하고 있음

#### □ 주거욕구에 맞는 급여액

- 한부모와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주거욕구가 더 높음. 한부모와 장애아동은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소득상한선(cutoff)를 높여주고 있음.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 추가 침실을 인정함(영국)
- 스웨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2만원~126만원, 평균 45만원을 아동주거수당으로 지급하며, 프랑스와 독일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94만원, 119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미국과 영국은 2명의 자녀의 침실분리 기준에 맞는 주거를 구할 수 있는 임대료를 지급. 주거품질 등을 검수하며 침실분리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인지 확인함.

#### 4. 반가운 변화의 흐름

- 최기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영, 2026)
- 기획예산처 장관의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대상 확대 의지(최은영, 2026)
- 최은영(2026)은 기준중위소득 80%(100%)까지 아동가구의 경우 주거비 지원을 주장함
- 이길제(2026)는 단기적으로는 주거급여에서 아동의 주거권을 고려하기 위해 임차급여 자기부담금 완화하고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고, 아동 주택수당을 중위소득 80%까지 도입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5. 토론자의 견해

- 단기적으로 이길제(2026)의 연구처럼 주거급여에서 아동가구의 자기부담금을 완화하고 최기상 의원의 대표 발의처럼 아동가구는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 혹은 최은영(2026)처럼 80%까지 확대하는 것에 동의함.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함.

##### □ 장기적으로 아동주거수당을 도입해야 함

- AI와 로봇화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향후 더욱 불안정해질 것임. 실업과 취업이 반복되고, 소득의 변동도 커질 것임. 자산조사 방식 급여는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며 근로의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수당방식은 행정비용을 줄이고 근로의욕에 영향을 덜 미치며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함
-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동이든 정부에서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불평등·불안정 심화 사회에서 기본소득, 기본자산의 성격으로 기능할 것임

##### □ 아동주거수당의 소득상한선을 최소 중위소득 100%에서 150%까지로 설정

-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하더라도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 가구 중 약 75.2%에서 85.5%까지만 지원가능함. 사각 지대가 여전히 15~25%까지 발생함(임세희, 2025).
- 장기적으로 150%까지 지원하면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 가구를 95~96%까지 포괄할 수 있음(임세희, 2025)

##### □ 단 소득에 따라 감액 지급할 것

- 스웨덴, 프랑스는 소득 증가에 따라 아동주거수당, 가족주거수당 지급액을 감액 지급함으로써, 주거수당이 불평등 완화의 효과를 가지도록 하고 총비용 증가를 억제함

##### □ 침실분리기준 등 주거품질의 준수

- 주거수당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급여액은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함
- 주거수당 지급 후 성별, 연령, 가구원의 관계에 맞는 침실분리기준, 환기와 채광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충족하는 주거품을 준수하는 주거에 사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주거품을 요구할 때 주거수당이 임대료 상승으로 귀결되지 않고 주거의 질 향상, 실질적인 아동주거권의 보장으로 이어질 것임

##### [참고문헌]

- 이길제(2026). 아동가구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비 보조 정책 수단 검토.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개정 토론회. 국회의원 최기상·북기왕·엄태영, 초록우산, 한국도시연구소. 2026. 5. 7.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임세희(2025). 아동주거급여의 필요성과 정책구성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77(2), 185-212.
- 임세희(2026). 주거빈곤아동, 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와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국토연구원,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터티. 2026. 3.6. 서울스페이스쉐어.
- 최은영(2026).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개정 필요성과 쟁점.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개정 토론회. 국회의원 최기상·북기왕·엄태영, 초록우산, 한국도시연구소. 2026. 5. 7.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토론 2

---

김승환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과장

#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확대의 필요성과 개선과제

김승환 과장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 I. 들어가며

2019년 10월 24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통해 “아동의 주거빈곤 문제를 사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을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다. 그리고 같은 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 이로부터 약 7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국제사회가 권고한 아동주거빈곤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면밀한 분석과 정책 평가는 부재하며,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지하·옥상·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은 44만 7천명으로 전체 아동의 5.2%에 달한다.

이르면 내후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7차 심의를 통해 그동안의 이행 결과를 평가받게 된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아동의 주거권 보장의 현실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같은 권고를 반복해서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한 조치 등 의무를 이행한 국가로 평가받게 될 것인지에 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되리라 생각된다.

토론에 앞서, 얼마 전 초록우산에 도움을 요청한 아동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세아(가명/영등포 거주 한부모가구)는 2022년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 주거지 침수 피해를 경험했다. 당시 집안으로 물이 급격히 차오르는 상황이었으며, 아동은 “냉장고까지 물이 차서 죽을 뻔했어요.”, “오빠랑 아빠가 같이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 않아서 죽겠구나 생각도 들었어요.”라며 가까스로 집에서 탈출했던 경험을 현재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세아의 가족은 현재 중위소득 48%이하의 소득기준을 초과해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고,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임대료 부담에 현재의 거처를 벗어나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세아는 여전히 반지하 집에 거주하고 있고, 다가올 장마 기간의 침수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이 사례는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 II. 아동의 적정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세계인권선언 제25조<sup>1)</sup>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이하 ‘사회권 규약’) 제11조 1<sup>2)</sup>,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 제27조<sup>3)</sup> 등 국제 인권 규범은 ‘적절한 생활 수준

-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을 누릴 권리'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주거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에서도 “모든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주거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권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며, 특히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는 발달과 학습,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의 전제 조건으로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UN-habitat(2015)<sup>4)</sup>는 “아동의 경우 적절한 주거의 부재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 전체적인 인권의 향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거빈곤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경우 특별한 집단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아동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돌봄의 공백에 노출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 쾌적하고 위생적인지, 적절한 발달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교육·돌봄·의료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침해할 정도의 주거비 부담은 없는지 등을 기준으로 아동친화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되도록 정책이 추진되고, 그 적정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확대 방안을 포함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의안번호17735)은 주거비 과부담, 불안정한 주거지로의 이동, 양육위기와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동양육의 위기를 예방하는데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III. 현행 주거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안

#### 1. 아동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거급여 소득기준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현행 주거급여 제도는 가구원 수와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한부모가구조차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낮아, 아동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머무르게 할 우려가 크다. 예컨대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 최저시급의 월급(2,156,880원<sup>5)</sup>)만 받아도, 기준중위소득 48%를 초과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식비, 의료비, 교육비, 돌봄비 등 필수적인 고정 지출 부담이 큰 아동가구의 입장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소득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단위 : 원/월)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기준 중위소득 60%	2,519,796	3,211,821	3,896,842	4,534,031
기준 중위소득 65%	2,729,779	3,479,473	4,221,579	4,911,867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Habitat,UN.(2015).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act Sheet No.21.

5) 월 209시간(주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10,320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이하로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의안번호17735)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아동양육 여부 등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다양화하고, 적정한 주거환경 마련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이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생계비와 교육비 등 양육 비용 전반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시흥시의 사례처럼 아동가구의 주거급여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지원법」에 따라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는 23~4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다<sup>6)</sup>. 그런데 이들 중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49~65% 이하 가구는 양육비의 일부를 주거비로 활용하곤 한다. 실제, 한부모가족이 ‘주거비 마련을 위해 빚을 진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21년 47.6%→’24년 50.7%)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주거비 문제가 심각하다<sup>7)</sup>.

이에, 기준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삼되 기준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급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 등의 문제로 아동가구 전체로 확대가 제한되는 경우,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부모 등 양육 위기 유형별 소득 기준선을 세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 2항에 “가구원의 연령·특성”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 2. 넓은 평형의 주택 공급과 보증금 지원한도 현실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현장에서 만났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이들은 자신의 주거상황을 “집에는 공간이 없어서 집 밖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요.,” “화장실에 갈 때면 관짝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등과 같이 표현했다. 이는 주거가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동의 휴식, 수면, 학습, 사생활, 정서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거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 방이 2개인 주택이라도 성별이 다른 자녀를 양육하거나 자녀가 성장할수록 독립된 생활공간이 필요하나,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은 이러한 아동가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아동가구는 높은 수준의 과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내 아동가구의 1인당 면적은 20㎡가 채 되지 않으며,<sup>8)</sup> 절반 이상이 현재의 거처가 좁다고 인식하고 있다.<sup>9)</sup> 최근 소형 평수 중심의 주택공급 방식은 최소 2~3개 이상의 방이 필요한 아동가구의 과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sup>10)</sup> 2019년 기준, 전체 공급의 86.7%가 60㎡이하로 나타났고, 아동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sup>11)</sup>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평균 전용 면적은 43.7㎡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가구의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

6)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0~1세)월 40만원, (2세 이상)월 37만원, 한부모가족 월 23만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7) 2024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8) 가구원수가 주로 3~4인으로 구성된 아동가구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이 매우 협소. 영구임대 아동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10.5㎡이며,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20㎡ 이하임.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토지주택연구원, 2023, 96

9)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는 비좁다(매우 비좁다 및 비좁다)는 응답 비중이 각각 86.8%, 83.0%로 매우 높으며, 국민임대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 중에서도 57.5%가 비좁다고 응답”,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토지주택연구원, 2023, 98

10) 2019년 기준, 건설공공임대주택 중 40㎡ 미만 주택이 48.5%, 40~60㎡미만 주택이 38.2%로 전체 공급의 86.7%가 60㎡미만 주택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거주 중산층 가구 유형에 따른 주거 현황과 공공임대주택 인식. 백혜선, 이영환 (2023).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4(5), 25-35.

11) 국민임대 주택(61.2%)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기존 전세(25.8%), 매입(9.4%)임대주택이 그 뒤를 따른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토지주택연구원, 2023, 75

〈공공임대 유형 및 특성 가구별 거주 면적 (단위: ㎡)〉

구분	1인당 전용 면적				
	영구	국민	행복	기존매입	기존전세
전체	23.4	26.1	24.5	29.9	27.3
아동가구	10.5	14.4	13.9	19.0	19.4

〈공공임대주택 내 최저주거면적 미달 가구 현황〉

가구특성	미달 가구 비중(%)				
	영구	국민	행복	기존매입	기존전세
아동가구	73.9	5.0	15.7	2.9	6.5
청년	5.4	0	1.5	4.0	4.0
신혼부부	-	4.0	6.6	1.2	3.4
노인가구	2.7	0.2	1.2	1.9	1.0
중장년 가구	9.1	0.4	3.2	1.5	3.0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설형 임대주택보다 넓은 평수의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신청 후 입주까지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수도권 기준 1억 3천만원에 불과한 정부 지원한도액은 민간 임대시장의 보증금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2년 단위의 재계약의 불안정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아동가구의 절반은 정부지원금으로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다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리거나, 은행 대출을 통해 본인이 추가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sup>12)</sup>. 결국,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주거환경의 조건인 교육, 의료, 돌봄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직주근접이 어려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반지하나 옥탑 등 주거의 상태가 열악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주거급여 지원의 확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 가구의 월세 부담을 낮추거나, 반지하·옥탑 등 비적정 주거로의 이주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주거비 지원의 즉각적 효과에 집중한 조치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아동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할 과제다.

### 3. 주거·돌봄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예방 및 통합지원 제도 마련

주거급여 소득기준 완화와 공공임대 공급의 확대에 집중하면서도 주거의 질적 측면이나 돌봄·자립지원과의 연계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주거빈곤 아동가구들은 주거지 제공의 단편적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테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받더라도 돌봄서비스 지원이 없으면, 돌봄공백이 발생해 생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고,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다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경험하며 아동양육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는 전국 8만 2천여 가구에 달한다<sup>13)</sup>.

이에,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분절된 지원체계를 통합해 총괄 부처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거·돌봄·복지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12)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토지주택연구원, 2023, 118

13) 아동양육(돌봄)위기가구 주거중심 돌봄·자립지원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초록우산. 2025. 18

또한 돌봄 등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미 2019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통해 “주거와 아동 성장단계에 맞는 돌봄서비스가 결합한 양질의 양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동양육 위기가구를 위해 공급되고 있는 물량은 없다. 또한 그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이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공주택특별법」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해 매입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건설임대주택에도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2건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복기왕·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며, 아동양육 위기가구를 위한 특화형 공공주택 공급 및 예산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해당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 IV. 결론

아동에게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생존과 보호, 발달이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며, 국가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가 보호, 실현되도록 적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우리 정부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이행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주거급여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

# 토론 3

---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

# 시흥형 (아동)주거비 추진 경험과 과제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

## 1. 추진 배경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원룸단지)이 전국 읍면동 중 아동 주거빈곤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 불법 쪼개기 원룸주택이 대다수.
  - 불량한 위생 상태도 문제지만, 아동을 위한 공간 부재가 주요 원인.
- 주거실태조사 결과
  - 시흥시 전체 16만5천 가구의 37.2%인 6만1천 가구가 주거취약가구, 그중 아동이 있는 취약가구는 1만5천여 가구.
  - 주거취약가구의 월세 비율이 약 46.7%.
    - ▶ (주거취약 가구 중) 38.3%가 지난 1년간 주거비 부담을 경험
    - ▶ (주거취약 가구 중) 22.5%가 지난 1년간 주거비 부담으로 식료품비 절감

## 2. 추진 경위

- 2016년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의 50%를 주거비로 지원
- 2017년 :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 2019년 : 아동가구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까지 지원 확대, 아동 1인당 기본 지급액의 30% 추가 지원(시흥형 아동주거비)

## 3. 지원 대상 가구의 특성 및 주거실태

- 가구 및 가구주 특성
  - 가구주 : 40대 49.1%, 50대 이상 26.4%, 40대 미만 24.5%
  - 주택유형 : 아파트 56%(시 전체 64.5%), 단독·다가구 28.3%(시 전체 16.4%), 연립 다세대 11.9%
  - 대부분 외벌이, 소득 200만원 미만과 부채가 있는 가구가 다수
  - 한부모 가구 비율 47.8%
  -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구원이 있는 가구 29.9%(시 전체 0.5%)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27%, (지하, 옥상 가구 포함 31.4%)
  - 아동의 불만 : 비좁음(80.7%), 내 방 없음(42.1%), 친구가 집 방문 경험 17.6%

#### 4. 정책 효과 (지원 이후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 매우 도움이 되었다. 88.5%, 도움이 되었다. 7%
  - 월세나 공과금 체납이 있었으나, 지원 후 주거비 걱정이 줄어들.
- 삶의 만족도 전반 증가 36.4%, 가족 구성원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4%
-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 상향 : 26.4%
  - (이주 가구 중) 시흥형 주거비 지원이 이사에 미친 영향이 크다 : 85%
  - (이주 가구 중) 면적 넓어짐 65.4%, 방의 개수가 많아짐 38.5%
  - (이주 가구 중) 보증금 증가액 평균 2,192만원, 월세 5.2만원, 관리비 2.1만원 증가
- 비이주 가구 조사 (이주 소요 및 이주 준비)
  - 이사가 필요하다 51.6%(단독·다가구는 84.4%) [아동 독립공간 위해서 73.8%]
  - 이주 준비 중 2.5%
  - 이주 준비를 못하는 이유 : 소득이 적어서 72.5%, 고용 불안 16.3%
    - ▶ 현행 주거비 지원만으로는 주거 상향 어려움. 이사 부대비용도 부담

#### 5. 향후 과제

- 시흥형 (아동)주거비 수급대상 확대
  - 2025년 : 예산 13.2억원, 월평균 433가구 지원(아동가구 약 230가구)
    - ▶ 월평균 900가구로 확대 필요(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가구 수 2,389가구)
- 이주배경 아동가구(외국인 가구 : 467가구 추정)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 주거품질 연계한 실질적인 주거 상향

#### 6. 결어

- 정책의 실행 의지는 예산과 인력의 투입으로 나타남.
  -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가 주요 수단으로 대두.
  - 단기간 내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어려우므로 아동주거비 지원이 대안 가능.
- 아동주거비 지원으로 주거 상향이 안 된 경우라도 아동 가구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는 분명함.
- 주거품질과 연계한 주거비 지원은 필요하지만 인력 수요와 비용 부담이 큼.
  - 제도 설계에 앞서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 공모가 필요
  - 실행 의지와 인프라(주거복지센터 등)를 갖춘 지역에서 우선 실시
  - 과감한 비용과 인력 지원이 필요



# 토론 4

---

박현창

기획예산처 국토교통예산과장

## [토론]

# 토론 5

---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 [토론]

# MEMO

# MEMO

# MEMO